第5次 日-韓 學術討論會

日本의 書面添附制度 및
韓國의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

(副題) 日本/會計參與制度 그 後· 韓國 /稅務士名稱使用 獨占 그 後

日時：2009/10/13(火)
場所：近畿稅理士會會館

近畿稅理士會/釜山地方稅務士會

目　　次

1 會長人事

Ⅰ 近畿稅理士會 會長 / 4
Ⅱ 釜山地方稅務士會 會長 / 6

2 主題 및 副題 發表文
Ⅰ (日本/主題) 書面添付制度에 對하여 / 8
發表者 : 業務對策部長 田 中 勇 治
Ⅱ (日本/副題) 會計參與制度 / 92
發表者 : 會計參與普及推進委員長 岩 橋 一 好
Ⅲ (韓國/主題)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에 對하여 /106
發表者 : 國際理事 郭 泰淳
Ⅳ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使用 獨占 /136
發表者 : 國際部員 黃 仁宰
:
3 質疑應答
Ⅰ 日本側에서 韓國側으로 質問 /176
Ⅱ 韓國側에서 日本側으로 質問 /186

4 參考資料
Ⅰ (日本) 書面添附制度의 普及·定着合意文 (日稅連/國稅廳) (韓國語) /200
書面添附制度의 普及·定着合意文 (日稅連/國稅廳) (日本語) /201
Ⅱ (日本) 書面樣式制定/法令解釋通達 (韓國語) /202
書面樣式制定/法令解釋通達 (日本語) /203
Ⅲ (日本) 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稅連) (日本語) /214
添附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稅連) (韓國語) /223
Ⅳ (日本) 國稅廳長官/事務運營指針 (法人課稅部門) (日本語) /233
國稅廳長官/事務運營指針 (法人課稅部門) (韓國語) /241
Ⅴ (日本) 稅理士法 및 施行令 (日本語) /248
稅理士法 및 施行令 (韓國語) /315

회 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긴끼세리사회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입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성경 회장 및 임원 여러분, 바쁘신 중 일본에 와 주시고 오사카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당 회는 1991년도에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한 이후 친선교류를 폭넓게 해왔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총회참가 외에 학술적인 면에서 연찬을 쌓았고, 더 한층 충실한 교류를 위하여 매년「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귀 회의 테마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전자화와 세무사 명칭 사용 독점입니다.

현재 전자신고가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선 귀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아주 중요한 세금계산서가 내년 1월부터 전자화되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들려주시고, 그리고 2003년12월31일 법 개정으로 인정받은 세무사의 명칭사용 독점에 대한 실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테마는 서면첨부제도와 회계참여제도 입니다.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제도와 함께 세리사의 권리로서 더욱 보급 ·정착을 꾀하기 위한 환경은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제2회 학술토론회에서 소개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후의 경과사항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인접한 국가간에 여러가지 제도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배우면서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이 학술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성경 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미야구치 사다오

회 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성 겸입니다.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님을 비롯한 긴끼세리사회 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회는 1991 년 우호친선합의를 맺은 이래 해마다 거듭되는 만남과 특히 지난해까지 4 회에 걸쳐 행해 졌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성년에 도달해 한층 더 성숙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상호이해와 협력에 바탕 하여 양회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새삼 제안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는 평화에 기초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의 우호친선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저희들은 이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사 제도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월 회원 60%가 투자하여 전산법인 “Hangil TIS”를 출범시켰습니다. 독일의 "DATEV"를 필적하는 전산법인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시간이 허락 하는 대로 이와 같은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토론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끝으로 긴끼세리사회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1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성 겸

제목 : (일본/주제) 서면첨부제도－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 도입－

2009년10월13일(화)
제5회 일한 학술토론회
장소 : 긴끼세리사 회관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 한국·중소기업「성실신고검증제도」도입을 향하여 －

긴 끼 세 리 사 회

목　　차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

1．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1．2　세무대리권한관계 (세무대리권한증서)

1．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1．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1．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2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효과와 문제점/첨부서면 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2．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제정

2．2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제정

2．3　세무대리권한증서 기재사례·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

2．4　첨부서면 작성시 세리사의 대응 /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검증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3．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후 제출된 수정신고관련 가산세 취급

3．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3．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3．4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 (법인세)

4　첨부서면제도가 주는 의의

4．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

4．2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4．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4．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6　참고문헌

7　참고자료

8　관계법령집

세리사법

세리사법 시행령

1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1.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1) 1951년

현재의 세리사법이 시행되었고, 제정 당시부터 불복신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때 의견청취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1953년

일본세리사연합회의 세리사법 개정 요망서에、「세무계산서류의 감사증명」을 세리사 업무로 추가 요청하였고, 당시 大蔵主税局은、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지 않고 대안으로서 서면첨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3) 1956년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서면첨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법개정에 따라,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조사하였고, 책임을 갖고 작성하였는가에 대하여, 그 책임 정도를 분명히 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리사가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고 세무행정청도 이를 존중함으로서 현행세리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경정처분전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되었다.

(4) 1960년

세리사 자신이 작성한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제도」에 새로이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세리사가 적법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정에 따라 경정처분전 의견청취제도에도 적용되어 세리사 업무가 세목전체로 확대된 결과 신고납세방식의 모든 신고서가 서면첨부대상의 범위가 되었다

(5) 2001년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시에、세리사법 제35조 (의견 청취) 제1항에「조사관련 사전통지전」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과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가 확충되었고, 실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서, 현행의 서면첨부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직원이 사전에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장부를 조사할 때 세리사법 제30조(세무대리권한의 명시)에 규정된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가 신고서에 서면을 첨부한 경우, 통지 전, 세리사에게 첨부서면 내용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면첨부제도의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1971년도부터 타局 보다 먼저 나고야 국세국 관내에서 시행되어 온 「확인서 첨부제도」는, 2001년 세리사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확인서 첨부제도」란, 납세자 본인이 정확한 신고 및 납세를 한다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근접하기 위한 시도로 신고시 세리사가 납세자의 신뢰에 근거하여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확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그 후의 동향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한 합의 -

일본세리사연합회와 국세청이 2007년8월에 마련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한 협의회」에서 2008년6월13일 본 제도의 보급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합의사항이 교환되어,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를 더한층 보급· 정착시키는 환경이 정비되었다.(구체적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을 참조바랍니다)

<u>참고 자료 (page 200)</u>

1. 일본세리사연합회·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문서, 2008년6월13일 합의

1. 2 세무대리 권한관계 (세무대리 권한증서)

서면첨부제도에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과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한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세무대리 권한증서는 일본에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의뢰자로부터 수권행위를 세리사법상 명확하게 하는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종래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양식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각 세리사회 단위로 위임장으로서 임의서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세리사법 개정 시 양식이 통일되었다.

○ 세리사법 30조 (세무대리 권한의 명시)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할 때에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무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대리 권한증서〕

접 부 인			정리번호	0000000

2009 년 7 월 21 일

○○세무서장

세 무 대 리 권 한 증 서

세리사 ,세리사 법인	성명 또는 명칭	근 세 다 로
	사무소명칭 및 소재지	근세다로 세리사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미치 0-0-0 (전화) 연락처 (전화( ))
	소속세리사회등	긴끼세리사회 동 지부 등록번호 등 제0000호

위 세리사(세리사법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대리를 위임합니다.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또는사무소	오사카시 ○○○○○○○ (전화)

1 세무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 목	(법인) 세	(소바) 세	(원천소득) 세
년 분등	년분(년도)	년분(년도)	년분(년도)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 )	( )	( )

2 기타사항

사무처리란	부문		업종			타부문등회부	( ) 부문

1. 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만 인정된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첨부 가능한 신고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 또는 신고납부 혹은 신고납입방식의 지방세 전부가 대상이다. 또한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관여한 형태의 정도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첨부서면의 양식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본세리사연합회· 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 합의문서에 의거 국세청에서 2008년6월24일부로 첨부서면의 양식개선에 관한 「법령해석통달」이 발령되었다.(양식은 하기 자료 참조)

참고자료 (Page 202) 2. 「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의 양식제정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 2008년 6월 24일 제정

(1)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작성할 때에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첨부서면에 기재해야할 내용은 신고서를 작성한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이며, 납세자가 계산하고, 정리한 사항은 아니다.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이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등에 대하여, 예를 들면, ①전표정리 ②각종장부의 기입, 정리 및 계산 ③손익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계산 및 작성 ④세무조정 ⑤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⑥상담사항에 관하여, 어느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또한 의뢰자가 직접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관계장부와 원시기록 을 대조, 이들 재무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었는가를 체크한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재한다.

(2) 심사한 사항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2항)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상담하며 심사하고 신고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한 경우, 예를 들면, 의뢰자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그 적합여부만 체크하며, 세리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자가 신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세리사가 의뢰자로부터 어떠한 상담을 받아, 심사 시 어떻게 장부를 제시 받았고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 할 때, 현저한 증감사항이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이 있은 경우에, 그 내용과 이유 등도 기재한다.

(計算事項, 審査事項等을 記載한 書面의 添附)

第33條의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국세통칙법 제16조 제1항 제一호[납부하여야 할 국세의 확정방식]에 규정된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八호 혹은 제 十一호[용어]에 게재된 신고납부 혹은 신고납입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전항에 규정한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타인이 작성한 것을 상담받아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성 되었다는 뜻을 재무성令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3. 생략

1. 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는,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1항)와 종래부터 경정처분전 의견청취(제2항) 불복신청관련 조사때의 의견청취(제3항)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때 신설된「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와 연동된 서면 첨부제도는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세무직원은 미리 사전통지를 한 뒤 조사를 하는 경우, 세리사법 제33조 의2에 규정한 서면이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고 세무대리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있을 때에는,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효과로서는, 신고서에 첨부서면 이 첨부되고 세무대리권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사전통지전 세리사 에게 의견청취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단계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실지조사가 생략된다. 또한 실지조사 때에도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게도 세무조사 시 불편사항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제외된다는 됨을 유의한다.

(2) 경정처분전 의견청취

첨부서면이 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시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경정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첨부서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리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조사함에 따라 반드시 경정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3) 불복청구관련 조사 때의 의견청취

국세불복심판소의 담당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불복청구에 관하여 세무대리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意見聽取)

第35條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에 규정한 서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관계되는 조세에 관하여 사전에 그 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30조[세무대리의 권한명시]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통지를 하기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2. 서면이 첨부 되어있는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할 경우에,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경정의 기인이 되는 사실을 세리사가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혹은 상담에 응하며 또는 심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당해 경정이 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당해직원의 조사에 기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혹은 국세국장)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등을 계산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 또는 계산착오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불복 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당해 불복신청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4. 생략

1. 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첨부제도」와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서면첨부제도의 틀을 유지 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비약적으로 확충시켜, 2002년4월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서면첨부제도의 변천은,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변천이기도 하며,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한을 명시함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는 전술한 대로 세 종류가 있으나, 그 적용관계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과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따라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는, 첨부서면이 신고서에 첨부되는 한편, 세무대리 권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이제도의 본질은, 세리사법 제1조에서 말하는 세리사의 공공적 사명을 실무상 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취지는 세리사가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관여하였고, 그 신고서를 세무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어떻게 조정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며, 그 결과 정확한 신고서 작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첨부서면	세무대리권한증서
①사전통지전 의견청취	○	○
②경정처분전 의견청취	○	×
③불복청구관련 조사 시 의견청취	×	○

○ ··· 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출이 의견청취의 요건이다.

× ··· 의견청취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아니한 것

○ 세리사법 제1조 (세리사의 사명)

세리사는、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며、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함을 사명으로 한다。 (1970년 법 제26호 개정)

2.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효과와 유의점 / 첨부서면 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2.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전술한 일세련·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합의문서에 근거, 첨부서면 작성시의 유의점과 작성기준이 되는「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을 2009년4월1일 제정하였다. 그 지침에는 「첨부서면 작성시 유의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二 첨부서면 작성시 유의점
>
> 1. 서면첨부는 어디까지나 세리사의 권리이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의 위촉계약에 의거,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 세리사의 관여 정도와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신고서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것이나, 신고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 3. 법령을 준수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의 결과는 신고서에 반영되지만, 첨부서면은 그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 4. 서면의 1 란부터 5 란은,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이들 란에 전부 기재가 없는 것은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 따라 첨부서면의 의의가 확실하게 되었으며, 첨부서면은 세리사법에 의한 세리사 고유의 권리로 작성되며 또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촉계약에 의거 세리사 업무의 하나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첨부서면은 신고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조사생략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리사는, 신고서 작성시의 과정을 상세히 첨부서면에 기재하며, 이 지침을 서면첨부제도의 의의에 따라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의 구체적인 작성기준과 각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고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기재정도(진보도)를 예시하는 참고자료로 해야 할 것이다.

> <u>참고 자료 (Page 223)</u>
>
> 3. 일본세리사연합회 「첨부서면작성기준(지침)」, 2009 년 4 월 1 일 제정

2. 2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 기본적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의 제정

국세청에서는, 전술한 일본세리사연합회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의 합의문서에 근거 의견청취 후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서 조사생략 통지를 하는 뜻의 「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1일 제정되었다.

이 사무운영지침의 개정은, 문서로서「조사생략통지(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한 요령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며 금년 7월10일 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제도의 호칭에 대하여, 개정 전 사무운영지침에서는「新서면첨부제도」로 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서면첨부제도」로 변경하였다. 사무운영지침은 「서면첨부제도를 적성하게 운영하고 세무집행을 가일층 원활화 간소화하기 위하여는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 정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세리사연합회와 협조하여 그 보급 등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여, 이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는 국세청과 일본세리사연합회의 협조가 불가결함을 사무운영지침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일본세리사연합회에서 전술한「첨부서면작성기준(지침)」이 정하여진 것을 명기하고, 이 지침을 참고로 작성된 첨부서면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사전통지전 의견청취」결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하 사무운영지침에 규정된「의견청취 실시(법인과세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만 이 개정 사무운영지침의 제정에 동반하여 일본세리사연합회「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과 연동하여 첨부서면제도의 운영시의 환경이 정비되었다고 한다.

<u>참고 자료 (Page 241)</u>

4. 국세청「법인과세 부문의 서면첨부제도 운영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 2009 년 4 월 1 일 제정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실시

총괄관 등은,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법인을 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에게 첨부서면 기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조사담당자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첨부서면의 각 란에 전혀 기재가 없는 것은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어도 보정의뢰, 의견청취 등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한다.

(2) 의견청취의 시기 및 방법

조사담당자는, 사전통지예정일의 1주간부터 2주간 전까지 세무대리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에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뜻을 구두(전화)로 연락하고, 의견청취일시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예정일의 전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세리사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의견청취내용

의견청취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부여된 세리사의 권리의 하나로 자리매김되며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가 신고 시 계산 등을 한 사항에 관한 것과 의견청취전에 발생한 의문점을 해소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입각하여 <u>의견청취 시점에서 의문점이 해명된 경우, 결과적으로 조사로 이어 지지 않게 됨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현저한 증감사항·증감이유와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이 있었던 사항· 변경의 이유 등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의견 청취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u> 다만, 개별·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후기 6에 의거, <u>본고 제3장3. 1</u>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취급을 참조) 또한 경정이나 수정 신고까지는 가지 않으나, 사후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청취시 그 지도사항에 대하여 세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의견청취후의 사무

조사담당자는, 의견청취를 한 후 다음사항을「응접부」에 기재하여 총괄관 등의 결재를 받아, 法人稅歷表 (간접제세는 간접제세조사부)에 편철 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작성 시 응접부와 같이 결재를 받는다.

① 상대방, 응접자, 조사대상 법인 명, 응접방법, 응접 일시
② 의견청취 내용
③ 의견청취 결과 세리사에게 지도한 사항
④ 조사로의 연결 유무
⑤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의 송부여부
⑥ 기타 참고사항

(5) 의견청취 결과를 세리사에게 연락

의견청취를 한 결과, 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리사에게「현시점에서는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원칙적으로「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으로 보낸다. 통지문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세무서 보관)을 법인세력표에 편철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두(전화)로 하며, 게다가 구두(전화)에 의한 의견 청취결과를 세리사에게 연락하는 경우「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송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후 첨부서면이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지도함을 유의한다.

또한, 세리사에게「현시점에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을 연락한 경우에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

① 과세상 지적 사항 또는 경정이나 수정신고로는 가지 아니하나, 사후에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한 사항

② 첨부서면의 각 란에 기재가 없는 것

③ ②의 각 란에 기재는 되어 있으나 불비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등 ②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6) 의견청취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본고 제3장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참조

2. 3 세무대리 권한증서 기재사례 · 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

본 절에서는, 서면첨부작성의 실무적 대응으로서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한 「세무 대리 권한증서」 및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기재례를 제시한다 (기재사례는 다음 항 이후를 참조바랍니다)

〔사례개요 : 법인세 및 소비세〕

1. 업 종
   종이가공품 제조업 (화장품상자 등의 종이제품 인쇄제조업
2. 사업규모 및 결산 · 신고자료
   ①청색신고
   ②매 출 액 300,000천원
   ③소득금액 6,000천원
   ④자 본 금 10,000천원
   ⑤종업원수 16명
   ⑥소비세 관련 사항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290,000천원
   •세별도 경리방식
3. 사업 및 결산관련 사항
   ①기계 및 설비가 증가하였다
   ②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있었다
   ③자회사주식을 매각하였다
4. 관여상황 등
   (1) 의뢰자가 작성한 장부서류 등
   현금출납장, 외상매출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임금대장, 받을어음장
   (2) 세리사가 작성한 장부서류 등
   세리사가 대체전표를 기표하고 있음
   결산서류, 총계정원장, 은행장부, 연말조정업무
   (3) 기 타
   시산표는 매월 작성, 보고하고 있다.
5. 서면작성 세리사
   〔개업세리사〕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세리사 긴끼 다로
   서면작성 관련 세리사 세리사 긴끼 다로

접 부 인			정리번호	0000000

2009 년 7 월 21 일

○○세무서장

세 무 대 리 권 한 증 서

세리사 ,세리사 법인	성명 또는 명칭	근 세 다 로
	사무소명칭 및 소재지	근세다로 세리사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미치 0-0-0 (전화) 연락처 (전화( ))
	소속세리사회등	긴끼세리사회 동 지부 등록번호 등 제0000호

위 세리사(세리사법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대리를 위임합니다.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또는사무소	오사카시 ○○○○○○○ (전화)

1 세무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 목	(법인) 세	(소바) 세	(원천소득) 세
년 분등	년분(년도)	년분(년도)	년분(년도)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 )	( )	( )

2 기타사항

사무처리란	부문		업종			타부문등회부	( ) 부문

법인세 확정신고서 (년분 2008년6월1일-2009년5월31일 사업년도분·)에 관련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제33조의2 ①)

접 수 인 2009년7월21일

○○세무서장		정리번호	0000000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성명 또는 명칭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서면작성관련 세리사	성 명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소속세리사회 등	긴끼세리사회 동지부 등록번호 제0000호	
세무대리권한증서 제출		유(법인세·소비세·원천소득세)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및 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본인(당 법인)은 신고서의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한 상담한 사항은 아래1부터 4란에 기입한 대로입니다.

1 본인들이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작성기입시 기초가 된 서류
대체전표,은행장부,총계정원장,시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주주자본등 변동계산서,계정과목내역서,감가상각자산일람표	현금출납장,당좌조회표,예금통장,지불일람표,외상매출금원장 및 일람표,임금대장,재고표,받을어음장,매입·외상매입금원장,매출관련청구서(복사분) 및 납품서(복사분)

2 제시 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를 제외)에 기재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비 고
위 1의「작성기입시기초한 서류」외,잔액증명서,사내 외주진행상황표의5/31분,차입반제예정표,타임카드,취득자산 증빙서류	매출관련 납품서(복사분)의 7월분-4월분

사무처리란	부 문	업 종			의견청취연락사항		사전통지 등 업적	
					년 월 일	세리사명	통지년월일	예정년월일

정리번호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구 분	사 항	비 고
(1)	매 출	기말장부 분에 대하여, 익월분 청구서에 계상된 매출 중, 결산일까지 납품완료분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청구서(복사분) 및 납품(복사분)
	매입·외주·제조경비	기말장부 분에 대하여, 익월분에 계상된 매입중, 결산일까지 입고완료된 매입등을 계상하였다.	매입·외상매입금원장
	재고자산	결산일에 실지재고조사를 하고 정리한 재고표에 의하여 보고 받고 계상하였다.	보관품에 유의 한다.
	급여, 임금수당	타임카드와 임금대장을 확인하였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중 현저한 증감사항	증 감 이 유
(2)	제세공과금의 증가	부동산 구입에 따른 등기비용(등록면허세등 642,800엔)과 부동산 취득세 727,400엔이 발생하였고, 고정자산세도 증가하였기 때문
	자본금의 감소	3,000,000엔을 감자, 「4. 상담한 사항」에 기재한 그대로

	(1)중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때	변경 등의 사유
(3)	없 음	

(2/4)

정리번호	

4 상담한 사항

사 항	상 담 요 지
자기주식의 취득·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상담이 있어, 적정가를 평가 계산한 결과, 3,000주의 가격이 34,815,000엔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 원천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0월0일 자기주식 3,000주를 위 금액으로 구입하고 동일, 동 주식을 소각 자본금 3,000,000엔을 감소시켰고, 배당에 따른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였다.
000㈜의 주식매각	자회사인 000㈜의 주식 3,000주를 매각시 매각금액을 상담받고, 적정가액을 평가한 결과 3,000주가 5,946,000엔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0월0일 동 주식 3,000주를 위 금액으로 매각하였다.

5 기 타

증빙서류의 보관, 정리상황은 양호하며, 매월15일 전후 시산표가 작성가능 하기 때문에, 결산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신고서 및 첨부서면 작성시, 긴끼세리사회의 업무체크리스트를 이용 과목전반에 걸쳐 확인하였다.

(3/4)

정리번호	

* 추가 기재사항		
A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1)		
B 구 분	C 사 항	D 비 고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내용년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청구서 등
특별세액공제	1. 구입한 기계에 대하여, 조치법 제42조의6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확인하였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였다.	청구서 등
	2.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의 구입에 대하여, 조치법 제42조의11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였다.	청구서 및 견적서 등
유가증권매각익	「4. 상담한 사항」에 기재한 그대로	
자기주식,자본금	상 동	

* 추가 기재사항		
A		
B	C	D

(4/4)

소비세 확정신고서 (년분 2008년6월1일-2009년5월31일 사업년도분·)에 관련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제33조의2 ①)

접 수 인 2009년7월21일

○○세무서장		정리번호	0000000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성명 또는 명칭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서면작성관련 세리사	성 명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소속세리사회 등	긴끼세리사회 동지부 등록번호 제0000호	
세무대리권한증서 제출		유(법인세·소비세·원천소득세)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및 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본인(당 법인)은 신고서의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한 상담한 사항은 아래1부터 4란에 기입한 대로입니다.

1 본인들이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작성기입시 기초가 된 서류
대체전표,은행장부,총계정원장,시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주주자본등 변동계산서,계정과목내역서,소비세과세구분계산서	현금출납장,당좌조회표,예금통장,지불일람표,외상매출금원장 및 일람표,임금대장,재고표,받을어음장,매입·외상매입금원장,매출관련청구서(복사분) 및 납품서(복사분)

2 제시 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를 제외)에 기재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비 고
위 1의「작성기입시기초한 서류」외,잔액증명서,사내 외주진행상황표의5/31분,차입반제예정표,타임카드,취득자산 증빙서류	매출관련 납품서(복사분)의 7월분-4월분

사무처리란	부 문	업 종			의견청취연락사항		사전통지 등 업적	
					년 월 일	세리사명	통지년월일	예정년월일

정리번호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구 분	사 항	비 고
(1)	차량비	경유대 중 경유거레세는 과세매입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서
	투자유가증권 양도액	주식양도 매각대금의 5%를 비과세 매출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식양도계약서
	토지 취득	.토지 취득가액 중 중개수수료 등의 과세 매입과 비과세 매입이 적정하게 처리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약서,영수증 등 .
	기계,설비 취득	기계와 정보기반강화 설비 등 구입과 관련, 과세매입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서 등

	(1))중 현저한 증감사항	증 감 이 유
(2)	없 음	

	(1)중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때	변경 등의 사유
(3)	없 음	

(2/4)

정리번호	

4 상담한 사항

사 항	상 담 요 지
없 음	

5 기 타

증빙서류의 보관, 정리상황은 양호하며, 매월15일 전후 시산표가 작성가능 하기 때문에, 결산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신고서 및 첨부서면 작성시, 긴끼세리사회의 업무체크리스트를 이용 과목전반에 걸쳐 확인하였다.

(3/4)

정리번호	

* 추가 기재사항		
A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1)		
B 구 분	C 사 항	D 비 고
과세거래 판정	당 사무소에서는 대체전표를 기표할 때에 과세거래 판정을 하며, 컴퓨터에 입력된 소비세 과세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리처리 방식은, 세금 제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청구서 등

* 추가 기재사항		
A		
B	C	D

(4/4)

2. 4 첨부서면 작성시의 세리사의 대응/ 실무적 관점에서 과제검증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와 연동된 것이며,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서면첨부제도와 관련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임으로, 본 절 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서면첨부의 유무에 따라 관련 납세의무자를 선별하는 것은 아닌가

(검토)

고문거래처의 상황(관여 년수, 계약내용, 기업규모, 경영관리능력, 경리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며, 어느 쪽이든 「모든 관여거래처」를 서면첨부의 목표 로 하지만, 대상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작성하거나 혹은 심사한 경우 신고서 마다 서면을 첨부할 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며, 모든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전문가로서 평소 관여한 거래처를 지도한 결과, 적법성을 가진 신고서에 첨부를 하는 것이 세리사에게 주어진 사회공공적 사명의 실현과 관련되는 것이다.

(2) 세리사에게 위촉 아니한 자는 첨부할 수 없어 불공평 하지 않은가

(검토)

서면첨부제도가 세리사의 권리로 확대된 것은, 동시에 사회공공적 사명에 관한 재 인식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사명을 구현화하고 그리고 담보하는 것이 서면첨부제도 의 본질이며 위촉 받은 납세의무자만의 메리트를 꾀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생략에 따른 조사수임 의무가 줄었다고 해도 이것이 목적은 아니며 또한 진정한 신고서를 조건으로 하는 서면첨부제도는, 위촉 받은 납세의무자만 서면첨부가 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아래 장래적으로는 세리사가 관여하는 납세의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가 서면첨부를 할 단계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단순히 세리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서면첨부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실지조사결과와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세리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검토)

세리사가 첨부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혹은 타인(납세의무자)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한 사항(세리사법 제33조의2 제2항)이다.

따라서, 신고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리사법에 규정된 탈세상담금지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서면을 첨부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표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명확 하게 하는 것이다.

(4) 첨부서면에 허위기재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검토)

세리사법 제46조에서는,「일반징계」로「세리사가,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면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또는 그 법률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세리사법) 제44조에 규정한 징계처분(계고, 1년 이내 세리사업무정지, 세리사업무금지)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다. 법치국가로서 법령위반, 허위기재를 한 경우 처벌대상 이 됨은 당연하다.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 받고 또한 심사한 사항이 일시적으로 그 후 실지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세리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사실인정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면, 법문 구성상 반사적으로 허위기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자기책임의 범위를 첨부서면에 기재하고, 의견을 표명 함으로서, 자기자신의 법적 방위를 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5) 세무행정의 원활화· 간소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검토)

서면첨부제도는, 어디까지나 세리사의 판단 하에 임의, 개별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며 기재사항도 법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세리사 자신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세리사법 제1조에 규정된, 세리사의 공공적 사명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면은 첨부되는 것이다. 이 독립성은, 조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권자(세 무행정) 또는 납세의무자 쌍방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 표명하는 서면첨부제도는 바로 세리사법 제1조의 사명을 구현화하는 것이다.

타인(납세의무자)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세리사가 심사하고, 그 적법성을 표명하는 것은, 바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한다라는 세리사법의 근간인 사회공공적 사명이다. 세무행정의 원활화 및 간소화는 세리사법이 요구하는 세리 사의 사명은 아니며 국가적인 요청에 입각하여 자기들이 응하는 것으로, 하청적인 의론의 여지는 어쩔 수 없다.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 취급

2009년4월1일 제정된 국세청「사무운영지침」에서는,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관련 가산세 취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6)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
> 의견청취를 하고, 그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어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 (생략)… 비위사항의 지적이 있었는지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따라 「경정예지」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함으로,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시의 개별· 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에 근거하여,「경정예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점에 유의한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세무서 또는 국세국의 담당직원은 신고서의 심리와 준비조사를 통하여 실지조사대상을 선정하며(표A), 실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전통지예정일 전에「사전통지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된다. 이 의견청취결과 의문점이 해결된 경우 실지조사는 생략되는 것이며 또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의견청취 실시 후 실지조사 착수 전의 단계 (표B또는C)에서,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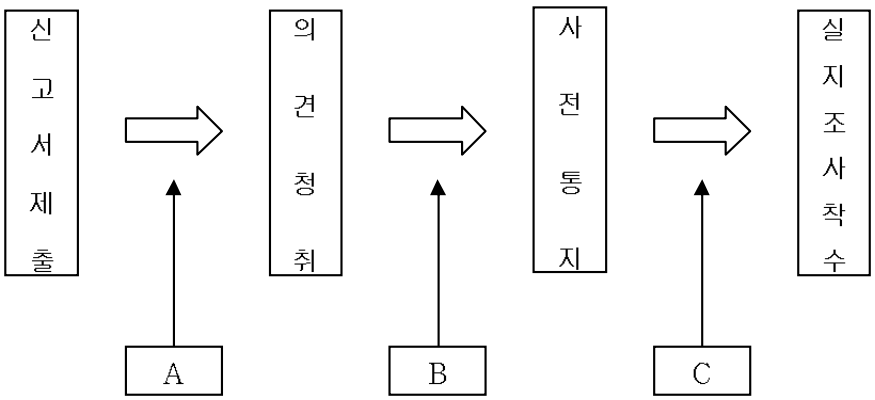

이 검증에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조사가 있다는 점」보다「경정할 것이라고 예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만, 이를 규정한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된 학설은, 사실인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며 또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과정에 세리사 등에게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연락도 아니한 단계 혹은 의견청취를 한 후 조사에 착수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무조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구체적 비위사항이「어떠한 경위로」되었는가 라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나의 고찰로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의 단계, 넓은 의미에서 조사착수 후입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을 받기 전에 세무대리권한을 가진 세리사가 확인 혹은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자신의 의사로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경정할 것이라고 예지되는 경우」는 아니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 국세통칙법 제65조

① 기한내 신고서 (환급청구신고서를 포함. 제3조에서도 같다) 가 제출된 경우(기한내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 적용 적용 시를 포함)에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거 제33조 제2항(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동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당해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관련 국세에 대하여,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국세관련 증가된 차액의 세액을 가산한 금액)이 그 국세관련 기한내 신고세액금액과 50만원과의 큰 금액을 초과하는 때의, 동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당해 초과부분 세액(동항에 규정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당해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一 누적증가차이세액 / 제1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전 그 국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에 따라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당해 국세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또는 경정관련 불복청구 혹은 고충에 따른 결정, 재결 혹은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에 변경이 있은 때 이에 따라 감소한 부분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며 다음항의 규정을 적용 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二 기한 내 신고세액 / 기한 내 신고서(다음 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에 따라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세액(이들 신고서 관련 국세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당해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또는 소비세관련 이들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금에 상당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95조(외국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제1항의 수정신고 혹은 경정 관련 동법 제120조 제1항 제5호(확정신고서 기재사항)(동법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동법 제120조 제2항(동법 제1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예납세액 또는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175호)제2조(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규정에 의한 경감 혹은 면제 받은 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조 제41호(정의)에 규정한 중간납부액,동조 제42호에 규정한 청산 중 예납액, 동법 제65조(소득세액공제) (동법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69조(외국세액공제), 제81조의14(연결사업 년도의 소득세액공제) 혹은 제81조의15(연결사업 년도의 외국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동법 제90조(퇴직연금 등 적립금관련 중간신고 납부) (동법 제145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그 금액에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는,그 신고서 또는 경정 후 법인세액) 또는 동법 제100조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소득세액

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재외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 제21조의8 (재외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공제), 제21조의15 제3항 및 제21조의16 제4항(상속 시 정산과세에 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계산의 기초로 된 사실 중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 세액(환급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함)의 계산의 기초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한 세액으로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들 항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그 제출이 그 신고관련 국세에 대한 조사가 있음에 따라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예지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은, 세리사의 권리행사로서 첨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작성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위촉된 세리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세리사 등과의 관련만인 것이며 또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리사 등이 작성한 첨부서면의 기재사항만이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편 질문검사권이란, 세무직원이 과세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된 과세요건의 사실에 관하여 질문 및 검사를 하는 권한인 것이며,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에 관련한 의견청취는, 어디까지나 세리사 등의 자주적이고 임의로 작성한 첨부서면에 관한 의견청취이며, 의견진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질문검사권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당국도 서면첨부제도를 운용 시,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의견청취시에 기재된 사항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53조 (당해 직원의 질문검사권)

① 국세청의 당해 직원 또는 법인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 혹은 소관 국세국의 당해 직원은,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 또는 소관 국세국의 당해 직원이 그 연결 모법인의 각 연결사업년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결 자회사를 포함)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장부서류(작성 또는 보존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식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는 인식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작성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편 및 제162조 제3호(허위기재 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죄)에서도 같다) 기타 자료를 검사 할 수 있다.

② 연결 자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소관 세무서 또는 소속 국세국의 당해 직원은, 연결 모법인의 연결사업년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조사 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결 자법인 및 당해 연결 모법인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장부서류 기타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3. 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서면첨부제도의 육성에는, 서면의 기재내용이 충실해야 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세리사도 세무관공서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된「의견청취」의 목적은 전술한 대로 질문검사권의 요건인 조세에 대하여「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와는 다르며, 세리사가 작성한 신고서 또는 세리사가 심사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가 상호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신뢰관계가 기초로 된다.

세무전문가인 세리사는, 의견청취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유의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1)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서 세리사법 제 1 조의「세리사의 사명」을 구현하는 것이며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고 세무집행을 가일층 원활화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2)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에게 부과된 의무적 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는, 세무대리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에게 하는 것이다.

(3) 서면첨부제도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서면의 기재내용 충실과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제도의 취지· 목적에 입각하여, 개별· 구체적인 의견과 회답을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4)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서의 심리나 조사여부를 판단 할때도 활용된다.

(5) 관여선 납세자의 개황과 경영상태를 세리사가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 가를 어필하고, 서면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6) 세리사의 관여 정도 및 세리사가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의 기재내용 에는 세리사 업무의 체크 체제 및 정확성을 나타낸다.

(7) 현저한 증감사항의 기재내용에는, 세리사가 분석한 사항과 검토한 사항의 해명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낸다.

(8) 현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정과목에 연동하여 증감한 과목과 소비세와 원천소득세와의 관련사항도 확인한다. 또한 그 전말을 기재한다.

(9)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이익조정과 연결된 항목이므로, 변경의이유 및 타당성 검토를 한다.

(10) 서면에 기재사항을 간단하게 한 경우나, 기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청취시에는 개별·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제출서면 등과 그 대응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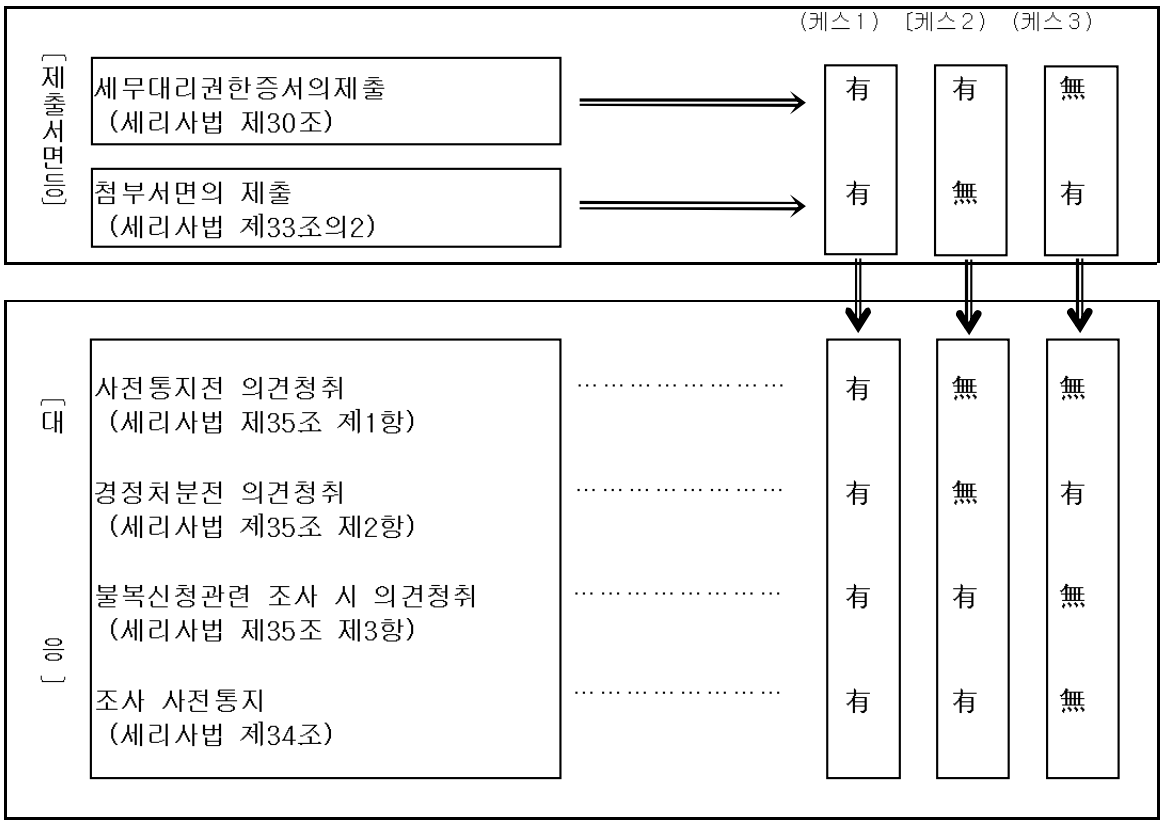

3. 4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 (법인세)

본 절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실무적 대응으로, 본고「2. 3 세무대리 권한증서 기재사례· 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에서 작성된, 첨부서면 관련 의견청취의 모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개요 : 법인세 및 소비세〕 종이가공품 제조업(화장품상자 등 종이제품 인쇄제조업)

등장 인물 세 리 사 : 긴끼세리사회 동지부 소속 근세 다로 회원
세무서직원 : ○○세무서 법인과세 제1부문 ○○○○총괄관

-- 상호간 명함교환 --

세무서직원 /

오늘 바쁘신 중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의 법인세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세리사법 제35조 에의거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우선 이 법인에 관여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리사 /

당 사무소에서는, 매월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가 작성하고 있는 현금출납장, 외상매출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임금대장, 받을어음장의 기장상황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대체전표를 작성합니다. 그 달 중 특수한 거래나 분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하여는 바로 설명을 듣고, 증빙류를 확인하여 분개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체전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매월 당 사무소에서 총계정원장 및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전화와 팩스 로 증빙등을 확인하여 지도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시산표를 회사에 보고합니다.

결산에서는,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잔액확인이 가능한 것은 확인작업을 하며, 결산 및 신고서 작성업무에는 긴끼세리사회가 작성한 업무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시 받은 장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이 회사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서는, 법령의 규정대로 적성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 /

첨부서면의「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보충할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세리사 /

매출금액, 매입· 외주· 제조경비 및 재고자산의 결산처리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계상, 받은 물품을 확인하는 등 기재된 그대로 매월 처리하며 대체전표를 당 사무소가 작성하므로, 정확한 손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카드와 임금대장도 필요할 때 수시로 대조하게 하며, 감가상각자산도 구입 시에, 제각· 대물 받은 것은 없는지 묻는 등, 가공인건비, 부외자산은 없는가 등, 적정한 신고를 하도록 평소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를적용할 때 확인한 청구서, 견적서등의 자료와 오늘 가지고 온 부동산구입 관련계약서, 영수증등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 기구비품, 부동산구입 관련자료를 손수 건네다)

세무서직원 /

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소각과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세리사 /

알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장에게는 세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 첫째와 셋째는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으며, 둘째가 가업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사장으로 출발 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사장은 자신의 건강에 불안을 느껴, 혹시 둘째가 제 몫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본인이 은퇴할 때를 생각하여 100%출자한 자회사인 자기의 사적 회사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 사업매각도 포함하여 모회사를 정리 하여,둘째에게 자기의 재능에 맞는 이 자회사의 사업을 승계시키는 생각입니다.

이 사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에 안을 마련하여, 평가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안건입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과 그 방법은, 사장소유의 주식액면 3백만엔을 모회사에게 매각하고, 이 매각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구입한 때 및 자회사 주식을 사장에게 매각시의 1주당 평가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복사분 입니다.

세무서직원 /

정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세리사 /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의문점은 모두 해소되었습니까.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가능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서직원 /

선생님의 공손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면첨부에 대한 저의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세리사 /

(잊은 것은 없는지 생각한다)

아, 서면에 기재한 사항 중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좋습니까

세무서직원 /

예, 보충사항으로서 듣겠습니다.

세리사 /

현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충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구입과 설비투자등의 증가로 차입금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보증료와 설비에 따른 손해보험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미경과분은 자산계정으로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 /

그렇네요, 이것 때문에 지급이자 및 보험료가 많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타 선생님께서 진술하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세리사 /

의견은 이것뿐 입니다.

세무서직원 /

그럼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덕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현시점에서는 실지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4. 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

일본의 사회환경은,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배경으로, 내외에 설비 투자와 개인소비의 억제로 국민의 예상을 초월한 영역까지 크게 변화하였고 또한 질적 · 양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일본은행의 白川총재는 2009년8월31일 담화에서「일본의 경기는,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구미제국을 훨씬 상회하는, 대폭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세리사를 둘러싼 환경도 또한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세법과 그 거래의 복잡화에 따라, 2001년 세리사법 개정을 계기로 국세전자신고· 납부시스템(e-Tax)과 지방세 포탈시스템(eLTAX)의 도입,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검토 그리고 2006년5월1일 시행된 회사법상「회계참여」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세무·회계의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그 업무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다양화되고,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일본에서 세리사는, 그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비지네스 찬스를 증가시키는 한편, 그 반면에 세리사를 둘러싼 리스크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며, 본고의 주제인 서면첨부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들 세리사는, 어떻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세리사법에 규정된 세리사의 권리인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고,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때 단순한 서면으로서의 제출이 아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가 사무소의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그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4. 2 금융기관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일본에서 지난해 중소기업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동향에 대하여, 기업을 총괄적 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계수적 지표인 재무제표 외에 세무신고서, 과목의 내역자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경향이다. 금융청에서 공표한「금융조사 매뉴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정세의 실정에 대하여「금융기관의 중소· 영세기업용 대출금의 안정성 평가시 중소· 영세기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재무상황뿐 아니라 기업과 대표자와의 일치성, 기업의 기술력과 판매력 등 기업의 경영실태를 참조하여 판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세리사가 자기의 책임과 권리로 진정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적법하고 적정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로서 중소기업등 관여선이 금융기관에 신롸양성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업의 정보공개를 촉진시키는 정세하에서, 서면첨부의 효과가 세무당국과의 대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넓게는 금융기관을 비롯 타 관청이나 사회에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기대된다.

4. 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일본에서는 종래 전문가 책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의료과실과 변호과실과 같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이었으며, 세리사에게 법적책임이 추궁된 예는 적었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근래에는 세리사의 책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례가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이 외 자기부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배경에는,국제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복잡화한 사회에서 전문가의 사회적책무에 대한 기대와,위촉자인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사법자세이며, 현재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 업무자세를 엄격히 묻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 이렇게 세리사에게 전문가책임을 묻는 소송사회에서는, 업무수행시 전문가로서 적정한 주의는 물론, 평소 세무전문가로서 지식, 경험, 능력을 높여 사회적 부탁에 응 하고 자기연찬의 노력은 당연하며, 또한 동시에 세리사도 법적인 전문가 책임을 의식 해야 한다고 한다.

서면첨부제도도, 그 범위에서 세리사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판단도 중요한 의사표시다. 그러나, 첨부서면에 명확히 자기의 책임 범위를 기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행사와 결과로서 자기 자신의 법적 방위기능도 하는 것이므로, 금후 서면첨부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된다.

4. 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양성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서면을 첨부하는 것, 또한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그 세리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다.

한편 과세권자인 세무관공서에서도 첨부서면의 기재내용 및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담당관의 재량으로 되어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서면첨부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행정이 입법취지에 따른 운용이 요청되며, 신뢰관계의 양성이 기초가 된다.

세리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첨부서면을 성실히 작성하고, 그리고 고도전문가 로서 의견진술을 하는 역량을 묻게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업무제공과 적절한 지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면첨부제도가 보급되고 성과를 얻을 때 제도의 입법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또한 세무행정은 이 제도를 운용할 때, 세리사의 입장, 의견진술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조사와 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을 가능한 한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2009년4월1일 제정된 「사무 운영지침」을 직원에게 주지시켜, 통일적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한 결과,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효과와 유의점 및 조사 관련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 취급등, 제도의 변천에 입각하여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제도는2001년 세리사법 개정시 신설된 「조사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고 세리사법에 부여된「세리사의 권리」로서 시행된 것이다. 게다가 서면첨부 제도에서「조사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 서면과 합하여 수권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세무대리권한증서)의 제출이 요건으로 되어있다.

또한 첨부서면제도에 관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맞추어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첨부서면의 작성은 임의이며, 신고서에 서면의 첨부여부, 또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전부 세리사의 재량인 것이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의 활용상황은 2001년 세리사법 개정시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전국에서 5.7%(법인세·2007년 사업 년도)로 현재 양성단계에 있다.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의 첨부비율 (법인세)

출처 : 국세청「실적평가서」 (단위 : %)

회계연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면첨부비율	4.4	4.6	4.9	5.4	5.7

세리사가 서면첨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연성, 더욱이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1970년 세리사법 개정시 일본의「조세법률주의」와「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한 세리사법 제1조의「세리사의 사명」에 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 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이며 적절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 때에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 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은 세무 및 회계에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들 세리사이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 역할은, 세리사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지도의 충실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절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인정하고, 실지조사의 생략으로, 더욱 적정한 납세가,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세리사가 관여하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이다.

따라서, 세리사회와 세무관공서는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가기 위하여 입법취지에 따른 운용을 꾀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협의가 요청되나, 현재 일본의 각 세리사회에서 는 각 국세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끼세리사회에서는,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을 꾀하며, 세리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올리고, 세리사에대한 연수회 개최와 서면첨부제도의 운용시 신뢰관계가 기초로 되는 세무행정 과 계속적 협의를 통하여 세리사에게 권리로 부여된 서면첨부제도를 보다 보급· 정착 코자 전 회원이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서면첨부제도의」변천과정과 구조가, 앞으로 세무조사방식을 대신 하는「사전검증」에 근거한 한국· 중소기업「성실신고검증제」도입예정을 향한 충분한 지표가 되기를 절망하는 바이다.

이 상

〔 참고문헌 〕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서면첨부제도가 확충 실시됨에 따른 질문검사권의 내용, 岸田貞夫, 2002년8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가산세의 부과와 그 대응, 宮川雅夫, 2002년8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불복청구에의 移行과 그 판단 加藤義幸, 2002년8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宮川雅夫 著「신 서면첨부제도의 이론과 실무」, 2002년12월25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坂田純一 著「실천세리사법(제 2 판)」, 2003년12월15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연결납세법인의 세무조사, 岩渕尚樹, 2004년10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서면첨부제도의 이용과 세무조사, 西村公克, 2004년10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신서면제도의 신설, 近藤新太郎, 2004년10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첨부서면의 작성·제출, 林仲宣, 2005년1월1일号
· 日本税理士会連合会「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2009년4월1일 제정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신세리사법(三訂版)」, 2009년7월10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速報税理」, 総特集 実践書面添付制度, 西村公克, 2009년9월1일号
· 国税庁長官「法人課税部門의 書面添付制度 運用시의 基本的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事務運営指針)」, 2009년4월1일 제정
· 財団法人日本税務研究센터編「税研」, 書面添付를생각한다杉田宗久. 08년11월20일号
·近畿税理士会 編「税務行政適正절차Q＆A」税務調査編, 1992년6월15일 발행
·近畿税理士会 編「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4년3월10일 발행
·近畿税理士会 編「〔改訂版〕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6년3월10일 발행
·近畿税理士会 編「〔増補改訂版〕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8년3월10일 발행
·近畿税理士会 編「〔改訂版〕業務체크리스트集」, 2008년3월10일 발행
·近畿税理士会 編「税理士業務必携(四訂版)」, 2009년3월10일 발행
· 大阪·奈良税理士協同組合 編／大江晋也 外 著「税理士를 위한 서면첨부제도 활용매뉴얼」, 2002년7월1일 발행
· 新日本法規 編／千葉寛樹 外 著「税理士法改正에 따른 書面添付制度의 活用과 기재예」 2002년11월2일 발행 외、近畿税理士会発行物、月次刊行物

참 고 자 료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문서, 2008년6월13일 합의 /200

2.「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양식 제정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 2008년6월24일 제정 /202

3. 일본세리사회연합회「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2009년4월1일 제정 /223

4. 국세청「법인과세 부문의 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 기본적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등 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2009년4월1일 제정 /241

관 계 법 령 집

○ 세리사법 /315

○ 세리사법시행령 /354

(일본/부제) 회계참여제도

「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최근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에 관한 각종 제도를 재점검하고 이를 현대용어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재편성 한 「회사법」과 법 시행에 따른 9개의 관계법률의 폐지 및 필요한 조치를 정한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1일 시행되고 있다.

「회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회사법제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뿐 아니라, 외국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회계참여제도가 신설되었다.

1. 신설목적

세리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가 취임을 전제로하여, 주식회사의 내부기관과 같은 위치이면서 내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며, 이를테면 사외이사와 동등한 입장인 제도로서 신설되었다.

2. 신설취지

(1) 회계참여의 「의의」

회계참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에 관한 전문식견을 가진 자(세리사 및 공인회계사)로서 이사· 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며 당해 계산서류를 이사·집행역과 별도로 보관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을 그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한다.

(2) 회계참여의 「기능」

특히, 회계감사인을 두지 아니한 중소기업에서 세리사 등이, 이사· 집행역과 공동으 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 집행역과는 별도로 계산서류를 보관, 명시하는 직무를 담당함에 따라 이사· 집행역에 의한 계산서류의 허위의 기재나 고의적 수정을 억제하며,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사· 집행역이 계산서류의 작성과 주주에 대한 설명이 줄어들게 되어, 이사· 집행역이 경영에 전념할 수가 있다.

3. 세리사 사명과의 관계

세리사법 제1조의 사명, 특히 「독립된 공정한 입장」과 「회계참여제도」와의 관련에 대하여, 회계참여는 회계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서 세리사의 회계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제안된 제도이며, 내부기관으로서 평가되었다고 해도 직무수행시 전문가로서 독립된 식견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제도이므로 「독립된 공정한 입장」이 손상되는 염려는 없다.

4. 경과

(1) 회계참여제도와 두 개의 중요한 지침

회계참여제도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참여의 직무수행상 일정한 룰이 필요하므로 일본세리사연합회 및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등은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과 「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은 회계참여가 이사등과 계산관계서류를 공동 으로 작성 시 준거해야 할 회계처리의 판정기준이 되며, 「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은 회계참여가 직무수행 시 실무에 참고로 하기 위한 행위의 규범이 된다.

이 두 개의 지침은 회계참여로서 직무수준의 동일성 확보가 주목적이며 이 제도의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다.

(2) 세리사 손해배상보험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신설이 불가피 함에 따라 일세련에서, 회계참여에 취임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에 일본국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받는 손해에 대하여, 전보한도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회계참여 배상책임보험」을 신설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 개요

1. 상품명	회계참여 배상책임보험
2. 약관구성	업무과오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회계참여특약조항
3. 계약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4. 배상 피보험자	세리사 혹은 세리사법인
5. 가입자(보험료 부담자)	세리사 혹은 세리사법인
6. 보험기간	1년간
7. 인수보험회사	(주)손보JAPAN,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3) 대외PR 인쇄물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 향상에 회계참여제도 」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 「회계참여 권유」 (긴끼세리사회)

5. 현상

(1)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 및 발행건수의 추이

①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 (2009년 7월말 현재)

会　　名	会別発行数
東　　京	389
東京地方	56
千　葉　県	42
関東信越	121
近　　畿	388
北　海　道	87
東　　北	56
名　古　屋	60
東　　海	100
北　　陸	49
中　　国	59
四　　国	24
九州北部	67
南　九　州	78
沖　　縄	4
計	1,580

※ 전국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증명원 발행건수(개인)는 328건(7월말 현재)

※ 최고 취득건수 15건

②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의 추이(개인 : 월차누계)

월	전국 (건)	긴끼 (건)
2009년 7월	1,580	388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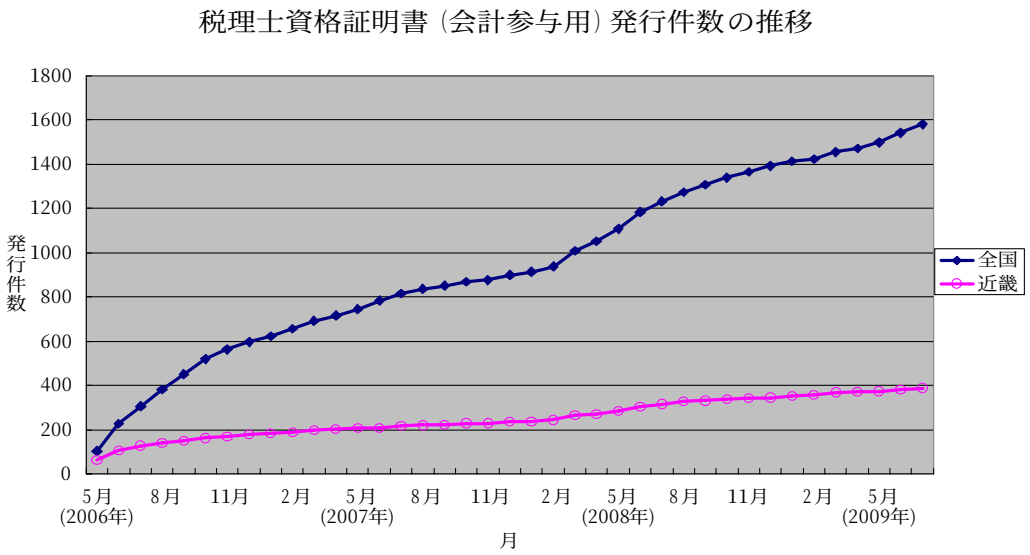

(2) 「회계참여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보고」 (일본세리사연합회 공표자료에서 발췌)

조사개요
【조사목적】 회계참여제도의 보급추진을 꾀하기 위한 정보수집
【대 상 자】 세리사 자격증명서 취득자
【조사방법】 우송 앙케이트로 실시
【조사기간】 2008년10월20일~2008년11월20일
【회 수 율】 52.7% (898건 송부/474건 회수)

문 회계참여 취임경위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관계상대방의 요청	73.9%	292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	1.3%	5
본인 스스로	27.6%	109
기 타	3.5%	14
무회답	1.0%	4

문 회계참여 취임기업의 고문세리사도 겸하고 있는지(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겸하고 있다	92.7%	366
겸하고 있지 아니하다	7.3%	29
무회답	1.3%	5

문 취임 시 회사에 요청한 사항

회 답	비율	회답수
회사법의 준수	50.9%	201
회계참여제도의 이해	70.9%	280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적용	57.5%	227
내부통제 확립	20.0%	79
이사회의 충실	22.3%	88
회계조직의 충실	19.7%	78
기타	3.0%	12
무회답	2.0%	8

문 취임한 기업 수 [사]

회 답	비율	회답수
1사	78.7%	311
2사	12.9%	51
3사	5.1%	20
4사	1.0%	4
5사 이상	0.8%	3
무회답	1.5%	6

문 취임기업의 자본금에 대하여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300만엔 미만	4.6%	18
3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12.7%	50
10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	55.4%	219
3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	17.5%	69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3.4%	53
1억엔 이상	6.3%	25
무회답	1.3%	5

문 취임기업의 창업년수에 대하여 (복수회답 있음) (

회 답	비율	회답수
5년 미만	21.3%	84
5년 이상 10년 미만	11.4%	45
10년 이상 20년 미만	15.4%	61
20년 이상 30년 미만	19.5%	77
30년 이상	43.5%	172
무회답	1.5%	6

문 1사당 회계참여보수(매월)(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5만엔 이하	39.7%	157
5만엔 초과 10만엔 이하	24.1%	95
10만엔 초과 20만엔 이하	13.9%	55
20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3.5%	14
30만엔 초과 40만엔 이하	1.5%	6
40만엔 초과 50만엔 이하	0.3%	1
50만엔 초과	1.3%	5
기 타	24.1%	95

문 회계참여에 취임하여 좋았던 점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회사의 금융기관과 거래처로부터 신용도가 높아졌다	32.9%	130
경영자로부터 신뢰도가 증가되었다	46.1%	182
이사회가 충실해 졌다	20.5%	81
보수를 얻을 수 있었다	22.5%	89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적용의 동기가 되었다	25.8%	102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42.3%	167
기 타	3.3%	13
무회답	7.6%	30

문 일세련에서 요구하는 시책 및 제도의 보급·정착에 필요한 것은(복수회답)

회 답	비율	회답수
대외PR 확대	50.6%	240
실무연수회 개최	45.4%	215
상담창구 설치	20.3%	96
취임자의 네트워크 설치	13.1%	62
우대융자제도 추진	36.1%	171
보험제도 보급	12.2%	58
기 타	4.4%	21
무회답	10.1%	48

(3) 「중소기업청 앙케이트 조사결과」 (중소기업청 공표자료에서 발췌)

- 추출표본 수 : 20,000건
- 조사대상 : 건설업、제조업、운수・창고・운수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서비스업의 중소기업
- 조사방법 : 우송법
- 조사실시기간 : 2008년2월15일 (금) ~2월29일 (금)
- 회수표본 수 : 4,569건 (총4,802건 중 대기업 자회사 및 무효회답을 제외)
- 회수율 : 24.0%

문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상황에 대하여

회 답	비율
1. 이미 도입하고 있다	8.5%
2.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3%
3. 주위상황을 보아 가면서	12.8%
4. 도입 할 생각이 없다(6.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9.5%
5. 제도를 몰라서 검토 않고 있다(6.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6.4%
6. 유한회사라서、제도와 관계없다	14.7%
7. 무회답	5.9%

문 회계참여를 의뢰한 회계전문가에 대하여

회 답	비율
1. 세리사	73.0%
2. 세리사법인	9.4%
3. 공인회계사	15.5%
4. 감사법인	0.5%
5. 무회답	1.6%

문 회계참여를 둔 이유 〈설치예정이유)에 대하여 (복수회답)

회 답	비율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를 높이고자	36.2%
2.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하여	16.9%
3.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리사로부터 요망에 의하여	11.2%
4. 선진적인 대처를 어필하고 싶어서	3.7%
5.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위하여(회계참여 설치회사 대상)	3.4%
6. 기 타	3.6%
7. 무회답	44.5%

(4) 사회적 요청

회계참여 설치회사를 대상으로 융자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 ··42

(내역)

융자기관	수
전국신용보증협회 연합회	1
동경都、사이타마현、오오사카府、나라현	4
은행	15
신용금고	19
신용조합	3
합계	42

(2009년8월26일 현재)

(韓國/主題) 韓國의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

부가가치세법은 1976 년 12 월 22 일 법률 2934 호로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77 년 7 월 1 일부로 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며 영수증 및 청구서의 기능 외 장부로서의 기능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신고는 2000 년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적인 보완을 거쳐 2002 년도 부가가치세신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자신고가 완전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관련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내년 1 월부터 우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대리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Ⅰ.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국민 총생산형(GNP type) 부가가치세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공제하고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단계에서의 임금, 이자, 이윤, 지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한다.

(2) 소득형(NNP type) 부가가치세

총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 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금, 이자, 이윤, 지대의 합계액인 국민순생산액과 일치한다.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원재료 및 중간재 구입액과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가산법 : 부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일정기간 중 발생한 각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합계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제법 : 부가가치의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기업의 부가가치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전단계 세액공제법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수출촉진 및 국제수지 개선

2) 투자유인

3) 조세의 중립성 유지로 자원배분의 합리화

4)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5) 조세제도의 간소화

(2) 부정적 효과

1) 물가 등귀의 촉진작용

2) 조세부담의 역진성

3)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4)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업무상 비용의 증대

5. 세금계산서의 기능

(1) 본원적 기능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2) 파생적 기능

1)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송장(invoce)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대금영수증의 역할도 수행한다.

2)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사업자가 교부 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세금계산서는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6.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부가기치세로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매출금액 10,000,000 원 (부가가치세 10% = 1,000,000 원 별도)

②원재료·상품 등 매입금액 3,000,000 원 (부가가치세 10% = 300,000 원 별도)

③종업원 급여,지급 5,000,000 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700,000 원(①의 1,000,000 - ③의 300,000)이 된다.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세법상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기존 종이계산서와의 차이점은 발행되는 형태의 차이이며,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드디스크 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출력에 따른 비용이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매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어 신고기간 세무사사무소의 분주함은 없어지게 된다.

2.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이 2008 년 하반기부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지침」을 완성하였으며, ASP 사업자 등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부여 하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3 . 시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2001 년 1 월 29 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 조 6 항의 규정을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는 방법(국세청 고시 2001-4 호)을 고시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注)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제외하고 있다.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교부 중계사이트 (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하는 방법

(2)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발행시스템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전산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3) 인터넷 취약계층의 경우

전화기를 통한 ARS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한 VAN 단말기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가 해당된다.)

2010 년 1 월 1 일 이후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신문·잡지, 우표·인지·증지, 담배, 금융·보험용역,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인적 용역,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등, 도서관등의 입장, 종교자선 등 공익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기타 부수면세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발급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다

①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한다.(공급자)

-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 등

②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 인증서 발급비용(세금계산서 전용)

  법인:4,400 원(개인 2,200 원), 범용:110,000 원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2007 년)는 전체 5.6 억 건의 15%수준인 8 천만 건으로 추정 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송신한다(인터넷 전산시스템)

- 사업자 자체 구축
- 발급대행업체 보유
- 국세청 전산 시스템

④ 수신 및 승인(공급 받는 자)

ERP 시스템 구축자 및 ASP(중계 사업자), 국세청 전산 시스템별 교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 등 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ASP) 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1) 매출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전자서명 후 거래정보를 ERP 또는 ASP 에 입력

2) 매입자는 수취내역을 확인하고 ERP 또는 ASP 사업자에게 승인 통보

3) ERP 또는 ASP 사업자는 전자서명 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전송

(교부절차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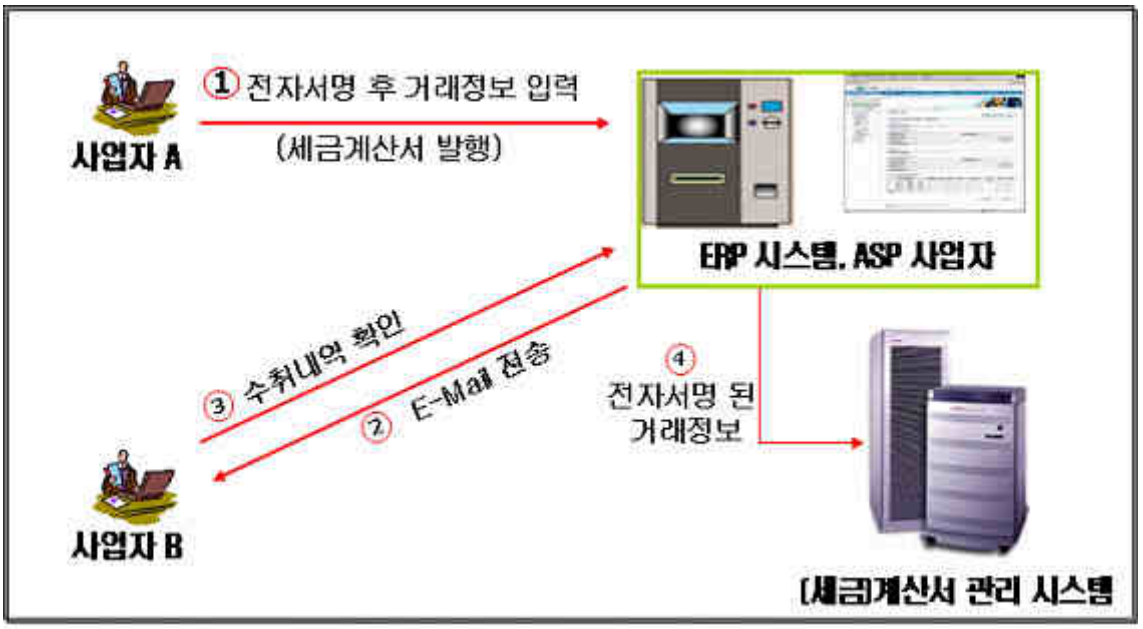

(2)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소규모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소규모의 법인사업자는 ERP 또는 ASP 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절차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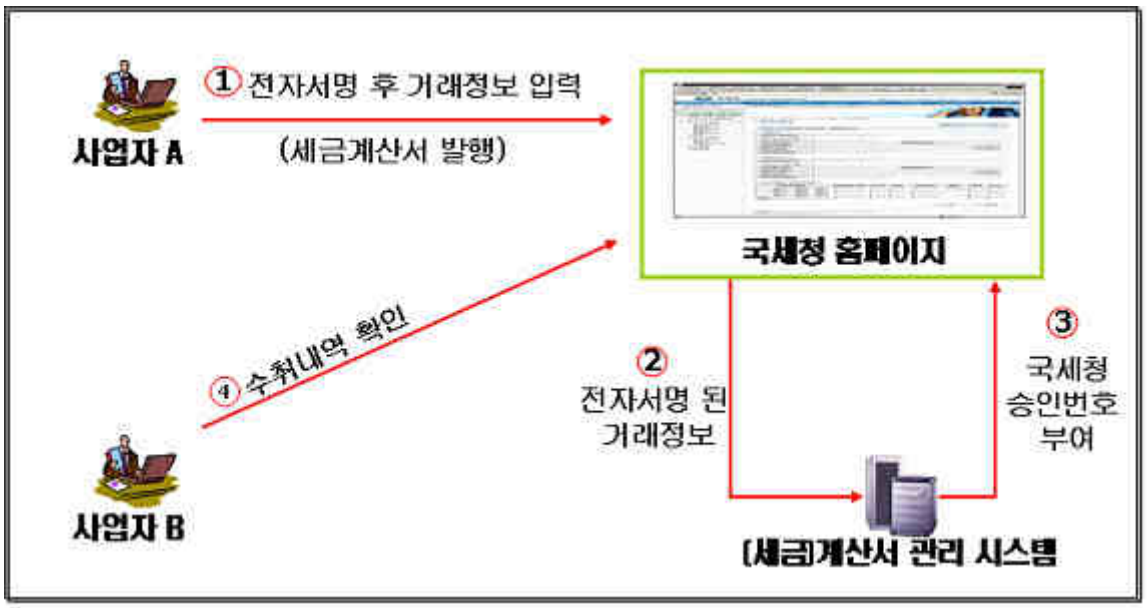

7.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발행일의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말함)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법인사업자는 2010 년 1 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아야만 한다.

(1) 법인사업자 (37 만 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SP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발급 받아야만 한다.

반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mail 계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여야만 한다.

(2) 개인사업자 (400 만 명)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E-mail 계정이 있어야만 하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3) 공인인증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E-Mail 계정

가급적 대용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요정보로서 다루도록 일종의 "국세청 발송 메일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9. 세액공제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는 교부 건당 100 원(연간 한도 100 만원)을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장점

(1) 업무시간 단축

온라인을 이용한 세금계산서의 전달로 업무시간이 단축 된다.

(2) 오류발생 감소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험성이 감소되고 수시로 집계 및 조회가 가능하여 접수사실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오류 발생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3) 장비 및 공간 불필요

종이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4) 업무 편의성 증대

대량의 세금계산서도 동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며, 인쇄 및 발송의 과정이 생략되어 업무시간이 감소 된다.

(5) 경상비용 절감

종이세금계산서 대비 우편 발송 비용이나 인쇄 비용 등 경상비용이 절감 된다.

(6) 허위세금계산서 근절

국세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으며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7) 철저한 보안 가능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100% 안정성과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철저한 보안이 보장된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1) 전산장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 된다.

(2) 소규모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오류 발생의 가능성 상존 한다.

(3) 국세청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 된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방안

2010 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법인사업자 의무화를 계기로 설립추진중인 전산법인은 회원들의 기대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와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 받고 있다. 지금 출범하는 전산법인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기장 및 신고대리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장분석 및 경쟁 시 분석을 통해 사업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현실적인 사업대안 제시, 다수 회원의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여 2-3 년 후에도 기장료가 감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 전산법인 설립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의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주축이 되어 전산법인(ASP 사업자) 설립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 월 29 일 현재 전체 개업회원 8,170 명 중 4,545 명이 참가(참가율/55.63%)하여 32 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전산법인 설립 추진단(신설법인 명/ ㈜한길 TIS, 홈페이지 www.bestbill.co.kr)이 지금 설립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2) 전산법인 사업추진 현황

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대략 6 억 매(최대 10 억 매)정도이며, 세금계산서 1 매당 발행수수료로 200 원을 책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간 2,000 억원대의 신 IT(정보기술)시장이 열리게 된다.

현재 50 여개 회사를 회원사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협의회에서는 1977 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 30 여년 간 사용되던 종이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국내 세무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② 한국세무사회에서 설립 중인 전산법인도 이들 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무사업계의 대 변혁을 예고 하고 있다.

③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5 월 4 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법인인 다테브(Datev)의 대표 캄프 (Kampf)와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다테브는 1966 년에 설립되어 현재 4 만여명의 세무사가 다테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6 억 유로(원화로 약 1 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의 사용료는 1 인당 300 유로 (원화 약 51 만원)정도이며 매년 65 유로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Ⅳ.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1.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 년 1 월 제정하여 동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
3)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정립
4) 공인인증기관 운용

2.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 년 7 월 1 일 시행하고 2001 년 1 월과 12 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1) 전자서명의 개념
2) 전자서명의 효력
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4) 인증서의 내용

5) 인증관리체계의 인정 규정

3. 세법상 규정

(1) 국세기본법

1) 전자신고의 정의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처리장치(전화통신장치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2 조 18 호)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동법 43 조 1 항)

2) 장부의 비치 및 보존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때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 85 조의 3 3 항, 동법 시행령 제 65 조의 7)

(2) 부가가치세법

1) 세금계산서(법 제 16 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1-4 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다)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12.31 개정)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8.12.26 신설)

③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④ 제 2 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2) 가산세(법 제 22 조)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개정)

②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26 신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 2 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1. 제 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26 개정)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 32 조의 5)

① 사업자가 제 16 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12.26 신설)

② 제 1 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 18 조 및 제 19 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12.26. 신설)

③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 원을 말한다(2009.2.4 신설)

④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 만원으로 한다. (2009.2.4 신설)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獨占使用 그 後

Ⅰ. 서론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는 세무사자동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식의 세무대리 일원화로 가느냐, 독일식의 자동자격을 배제하고 다원화로 가면서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실리로 가느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이전에는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하는 세무대리 일원화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지만, 사실상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어려워 형식적인 세무대리 일원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자동자격폐지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세무사의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격이 있으면서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법상의 모순이 있지만, 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업무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납세자의 인식과 선택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세무사법 위헌여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공감대와 입법과정상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자동자격폐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진행과정

1. 한국세무사제도 변천과정

(1) 세무사제도의 탄생

우리 세무사법은 1961.9.9.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여 탄생하였다. 재무부에서 일본의 세리사제도를 모방하여 세무사법을 초안하였으나 당시 계리사법에 계리사업무로 규정된 세무대리 업무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계리사의 직무로 남겨놓고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2) 세무대리 일원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추진

1962년 세무사회를 창립할 때 세무사 수가 131명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공인회계사들이 자동 자격을 이용하여 등록한 것이었다. 1977년대부터 세무사등록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었고 세무사회에서는 세무대리 일원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1980년에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세무대리일원화를 찬성하는 검토의견을 재경부에 보냈으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반대로 법개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에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을 세무대리의 준거법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인 세무사는 세무대리수입이 전체수입의 90%이상이 되어야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 가입을 면제하여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세법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명칭으로만 표시되어 세무사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3)자동자격 폐지 및 세무사명칭 독점사용 세무사법 개정추진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약 15년간 이론을 개발하여 정부에도 홍보하고 공인회계사회 및 변호사회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의원입법을 통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배제를 추진하여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자동자격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각자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각국의 사례

(1) 미국

미국의 세무사제도는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EA), 공인회계사(CPA), 변호사(Lawyer)는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며 무제한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각 주정부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2) 독일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다만 그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세무대리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을 보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오스트리아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중국

최근에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경우에도 세무사만이 세무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일본

세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자격을 자동으로 주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명칭를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세리사연합회에 등록, 입회하는 조건으로 명칭사용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소위 허가공인회계사라도 반드시 세리사회에 등록하고 세리사의 명칭으로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세리사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세무사법 개정내용

(1) 법 개정에 따른 세무사법 적용 요약 (법률 제7032호 2003.12.31.)

1) 요약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2004년부터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조에 의해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하며, 여기에 등록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①세무대리업무 개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 변호사는 임의등록이 가능하다.

②세무사명칭 사용

위 1)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③세무사법 적용

위 1)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회 가입과 제명, 교육,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 세무사법 규정은 적용, 다만, 전업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전업이라 함은 전체수입금액 중 세무대리업무 수입금액 비율이 90%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3)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①세무대리업무 개시

공인회계사는 재정경제부의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는 등록할 수 없다.

②세무사명칭 사용

법 개정 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세무사법 적용

위 1)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자는 세무사법 규정 중에서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의 결격사유, 기명날인, 조사통지,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금지, 명의대여금지, 사무소직원, 사무소의 설치, 장부작성,

係爭권리의 양수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 규정은 제외), 벌칙과 관련한 규정만 적용된다.

4) 경과조치(개정부칙)

①법 개정 전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개정 전까지 미등록의 경우)는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②법 개정 전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세무사회 가입과 제명, 교육,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전업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법 적용요약표

(법률 제7032호) 2003년12월31일 법 개정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 취득자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 취득자	
구 분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1)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①재정경제부 세무사등록부 등록	필수	임의	불가	불가
②재정경제부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무관	무관	필수	불가
③세무사명칭사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2)세무사법 적용여부(등록에 한함)				
①한국세무사회 가입 및 제명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②교육 관련 의무규정	없음 1)	없음 1)	없음	없음
③징계 관련 규정	적용 2)	적용 2)	적용 2)	없음
④업무(비밀엄수,신의성실 등)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⑤벌칙 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⑥기타 규정	적용	적용	없음	없음

*1) 전업인 경우에는 적용

*2) 세무사회 회칙 위반 관련한 징계규정은 적용 아니함

4. 세무사 명칭 독점 사용을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

(1) 대국민 서명 운동 전개, 105만명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서명

세무사회 5,900여 회원은 4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0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

(2) 전국민 대상 갤럽 여론조사

2003. 9. 23. 한국갤럽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5.3%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의 90.7%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3. 10. 2.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 모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는 계속하더라도 납세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석한 납세자도 토론자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토론자와 납세자들은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Ⅲ. 세무사 명칭의 독점사용 그 이후

1. 세무사 명칭 독점사용으로 인한 효과

(1) 경쟁을 촉진시켜 세무서비스 질의 향상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세무대리 시장에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되었다.

(2) 명칭혼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와 정확한 정보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법에서 정한 검증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또한 명칭혼용에 의한 왜곡된 선택에 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자'와 '그 외의 세무사자격소지자'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다

(3) 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그리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르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목적과 사명이 세무사와 다른데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과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었다.

(4) 자동자격폐지와 유사한 효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세무서비스의 소비자 관점에서 세무사라는 명칭은 조세전문가라는 인식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의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자격자로서의 공문발송, 간판, 명함 등의 영리광고 목적으로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 대외적으로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 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실익 및 의미까지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세무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무임승차가 간접적으로 차단되어 자동자격폐지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무대리인 현황

(1)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 현황 (국세청통계자료 : 매년 말 기준)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2 년	9,943	5,141	4,572	229
2003 년	10,831	5,717	4,768	346
2004 년	12,378	6,210	5,740	428
2005 년	13,584	6,622	6,447	515
2006 년	14,382	7,014	6,819	549
2007 년	15,231	7,424	7,221	586
2008 년	16,448	7,798	8,030	620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기존 세무사등록부, 2004 년부터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2)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등록 현황 (한국세무사회 : 매년 3 월말기준)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3 년	10,544	5,254	151	25
2004 년	12,174	5,829	151	26
2005 년	13,442	6,297	157	26
2006 년	14,245	6,694	159	24
2007 년	15,083	7,096	155	25
2008 년	16,296	7,463	159	24

(3) 자격사별 수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4 년	20,965	6,191	7,886	6,888
2005 년	23,636	6,676	9,267	7,693
2006 년	25,650	7,088	10,137	8,425
2007 년	27,815	7,521	11,068	9,226
2008 년	30,495	8,133	12,191	10,174

3. 세무사법 개정 이후 진행사항

(1)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1)요약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 받으면서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2008 년 5 월 29 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무사의 명칭은 그 직무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①다수의 기각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세무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세무대리','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②소수의 반대의견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

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은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분석 및 검토

①소비자 권리의 침해 여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한편으로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의 고유 직역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납세자는 "자격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세무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다른 자격사로써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구분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평등권 침해의 여부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 및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가 모두 동일한 능력과 전문성 또는 자질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그 선발시험의 과목, 평가방법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그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의도하여 취득한 자격'의 명칭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자격'의 명칭 사용을 제한 받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뿐,

변호사가 세무, 세무대리, 조세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국가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검증된 자임을 표지하는 전문자격사의 자격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자격사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자격사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자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결국 전문자격자가 자격사 명칭에 대한 사용여부 또는 그 행위의 영리 광고 등의 표시행위 등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세무사'의 자격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조세법과 세무회계의 행정실무적 능력(비 법률 과목인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의 전문성이 많은 비중 차지)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전문성의 표지는 오로지 세무사자격시험으로만 검증되는 전문성을 표지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자격 취득자와 세무사자격시험으로 얻어진 세무사자격 취득자는 그 취득경위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얻어진 세무사자격을 근간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들에 의한 "세무사'의 명칭사용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지만, 변호사에 있어서의 "세무사" 명칭은 사법시험을 통해 당초에 주어지지 않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빌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칭 여부만을 제한할 뿐 그 외에 변호사 직무 내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변호사의 자격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응시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유리한 지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을 그 내용

을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격사, 즉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다만 세무사라는 고유 직역을 일면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관련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현행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본래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와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에게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제도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것이다.

(2)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재발의(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08.8.7)

1)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2)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기획재정위원회 2009.2)

①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

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격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음

②변호사 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700 여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③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업무에 관한 과목이 거의 없으며 1 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조세법도 거의 선택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④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⑤현행 세무사법 제 3 조에는 세무사 시험합격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 20 조 제 2 항에서는 동법 제 6 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입법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⑥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분야 시장이 일정 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유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나아가 해외 자격사와의 직역다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⑦다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호사법제 3 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실익이 없다는 점,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Ⅳ. 향후 과제

한국세무사제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복잡해진 납세환경의 변화와 전자세정의 확대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편,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자격폐지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자동자격폐지와 관련한 입법취지 즉,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명칭을 전문적인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각 자격사의 고유한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자는 입법의도를 훼손하면서도 법사위원회는 삭제되었던 자동자격을 되살리도록 수정하여 법체계상 양립할 수 없는 상충 조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무사자격이 부여 되면서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법적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이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 년 개정 전의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의 현실성 등 형식적인 세무대리 단일화의 문제점과 개정 후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와 관련 세무사미등록자가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위반의 감시감독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엄격한 법 집행의 실효성의 문제점으로 양자 모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와의 꾸준한 대화와 논리의 연구로 자동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입법과정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으며, 자동자격폐지는 세계적 추세로서 국민의 합리

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자격사의 대량배출과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법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무·회계시장의 과다경쟁 속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와 권익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태주. 세무사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 세정연구원 2008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정은선. 세무사 제도의 발전동력을 살려야 한다, 세무사제도발전연구소 2006

김웅희.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9

김광묵.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0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광 묵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상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08년 8월 7일

3. 회 부 일: 2008년 8월 29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4호 삭제).

Ⅲ. 검토의견

구 분	현 행 (세무사법 제 3 조)	개 정 안
세무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 제〉

□ 개정안은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1)]

첫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격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음.

즉,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들을 세무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신뢰하게 함으로써 세무대리를 이용하려는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봄.

참고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둘째, 변호사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700여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셋째, 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2]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업무에 관한 과목이 거의 없으며 1 차시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조세법도 거의 선택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3]

〈변호사 및 세무사의 시험과목 비교〉

구분	세 무 사	변 호 사
제1차시험과목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 ◦택1(상법.민법.행정소송법) ◦영어	◦헌법 ◦민법 ◦형법 ◦택1(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 영어
제2차시험과목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함)·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넷째,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다섯째, 현행 세무사법 제 3 조에는 세무사 시험합격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 20 조제 2 항에서는 동법 제 6 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으로 보임.[4)]

따라서 세무사법 제 3 조의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여 입법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분야 시장이 일정 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유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나아가 해외 자격사와의 직역다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호사법 제 3 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는 점,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5)].

일본측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질문 1)

한국에서는 이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稅에 관한 전자화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전자화함에 따른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액공제외 다른 이유는 무었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본에서 稅의 전자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참조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전자신고는 완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세액공제라는 메리트를 시행 초기부터 줌으로서 전자신고 비율을 증가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이외 다른 사유로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01년도가 17.2%, 2002년가 21.8%, 2003년도가 23.8%로 꾸준히 보급률이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말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4.9%(OECD 회원국 평균보급률 10.2%의 2배 수준)로서, 회원국 중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전자신고 비율을 증가 시켰다고 보아 집니다.

2. 주민등록제도 및 사업자등록번호제도

한국에서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완벽하게 부여되어 있으므로서 전자신고가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보여집니다.

3.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직접 수행

수임업체의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세무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수임계약과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계약이 된 경우 납세자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세무사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기 직접 하는 점입니다. 수임 받은 업체는 전부 전자신고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로서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으며, 한편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번에 한국세무사회가 전산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큐리티를 포함하여 그 현상과 장래성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메리트 및 불리한 점

(1) 메리트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현행 세무사업계의 업무는 자료 수취 후 종이 전표 입력 작업을 거쳐야만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하에서는 자료 수취 및 종이 전표 입력 작업이 생략되고 데이터 연동을 통한 회계처리가 가능해 져 단순 업무를 대폭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사업계의 단순 업무 감소는 고객 거래처에 대한 양질의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이어져 고객사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신고 시 오류 발생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세무사업계의 업무착오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가산세 부담을 감소시켜 줍니다.

(2) 불리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자동 연동 기장으로 세무사업계의 단순 자료 입력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고객사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될 될 경우 세무사업계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의 세금계산서 월 마감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상담 빈도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며, 영세한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여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월별 거래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단순 발행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경우 보다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어 이로 인한 세무사업계의 원가 상승이 수반될 수 있고, 유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책임문제 등으로 납세자와 세무사업계와의 다툼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세무사회의 전산법인 설립에 따른 시큐리티 및 장래성 등

현재 예상되는 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는 6억 건으로 추정되고 이는 1,200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한국 내에서는 약 7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경쟁에 뛰어든 한국세무사회 설립 전산법인인 ㈜한길TIS는 단순한 세금계산서 발행만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회계와의 연동을 통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동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세무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산법인의 수익성을 위한 1차 과제인 고객 확보는 고객 거래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8,500여명 한국세무사회 회원 세무사의 인적 재산을 이용할 계획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안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 사항으로 우리회의 전산법인은 기능성, 보안성, 사후관리 등의 인증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기능,보안,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발생치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은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로 그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세무사업계는 우리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시장 선점을 위해 전산법인을 설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산법인 설립을 통해 거래처의 소중한 정보를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으며 전산법인 운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질문 3)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는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세무사 명칭사용 독점은 쟁취하였습니다만, 이 개정 이후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을 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감소한 것입니까?

(답변)

발표자료 중 세무대리인 현황에서 (1)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현황에서 2004년부터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2004년부터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수가 반영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는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신규로 등록한 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자격사별 총수		국세청세무대리등록		세무사회등록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4년	7,886	6,888	5,740	428	151	26
2005년	9,267	7,693	6,447	515	157	26
2006년	10,137	8,425	6,819	549	159	24
2007년	11,068	9,226	7,221	586	155	25
2008년	12,191	10,174	8,030	620	159	24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이후 국세청세무대리등록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등록비율이 직전 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격사 대비 세무대리등록비율은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2004년 72%, 2005년 69%, 2006년 67%, 2007년 66%, 2008년 65%이고, 변호사는 매년 평균 6%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 받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의 등록 독려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록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교육관련 의무규정」「징계관련 규정」「업무(비밀엄수· 신의성실)규정」「벌칙규정」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① 무엇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② 그 결과 제도운영상 폐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③ 향후, 축소· 폐지 할 예정은 있습니까?

게다가, 한국에서는 「국세청 등록 세무대리인」「세무사회 등록의 세무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운영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① 먼저 2003년 개정 이후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의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의 고유직무로 포괄적인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법적용이나 세무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자격사가 세무대리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사등록부(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공인회계사)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관리번호가 부여되며, 매년 세무조정반을 구성하여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하나,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등록, 관리번호 부여 및 조정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이 있으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세무대리업무(기장 및 세무조정 등)를 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있어, 국세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③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서 그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각 자격사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03년 개정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와 개정 이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나, 여러 번의 세무사법개정으로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개정 이후 세무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법 집행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韓國側 事前質問 事項

(질문 1)

회계참여제도는, 2006년5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서 이 제도를 내외에 보급· 육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전 회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회사의 고문세리사가 회계참여를 겸하고 있는 비율이 92.7%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회계참여에 대한 월 보수액이 10만엔 초과기업이 20.5%나 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회계참여를 설치한 업체가 1,580개회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회계참여도 설치하고 세무신고 시 서면도 첨부함으로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 제도가 醸成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회계참여의 보수에 대하여는, 10만엔 초과 기업이 20.5%인 반면에, 10만엔 이하의 기압은 63.8%로서 조사대상 기업 중 과반수이상 차지하며, 그 중 5만엔 이하의 기업이 39.7%로 되어 있으며, 한 마디로 회계참여의 보수비용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참여 보수는, 회사법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정해지며, 보수액은 회사의 규모, 계산서류의 보존· 명시를 포함한 역무제공의 정도 및 책임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확실히 회계참여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세리사보수 이외에 회계참여 보수를 부담함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계참여제도는 종래 상법특례법상 대회사(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에게는,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이사의 업무집행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말함) 양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감사역의 확보는 어려우며, 회계감사인 감사는 신뢰성은 높이나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계산서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전문가인 세리사등이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함으로 그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문세리사가 회계참여를 겸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문세리사가 본 제도의 PR을 적극적으로 해왔었고, 이에 적절하게 회계업무를 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참여 설치회사가, 본 제도시행 후 3년여 경과한 지금 세리사 등록자 수 약71,600명에 비하여, 1,580개사 정도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하여는「중소기업청 앙케이트 조사결과」알 수 있듯이 회계참여제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기업이 26.4%로, 결코 본 제도의 주지가 불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용자인 중소기업이 도입에 따른 명확한 메리트를 찾아볼 수 힘들다는 점과 도입한 경우의 금융기관 등의 인센티브가 아직까지는 도입동기까지 다다르지 않은 점 등입니다.

여기서, 본 회에서는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주지로부터 보급 및 정착단계에 있다는 인식아래, 그 시책을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회계참여보급 추진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2)

일본의 書面添附制度는 세무당국의 稅務調査前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므로서 세무집행의 원활화와 간소화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세무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되는바, 서면첨부제도 시행 후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서 서면첨부 및 의견진술에 의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 납세자에 대한 실지조사가 집행되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2006사무 년도부터 2008사무 년도의 법인세의 서면첨부, 의견청취 및 실지조사 생략비율에 대하여, 아래표 그대로이며, 조사관련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결과, 실지조사가 생략된 비율은 약30% 전후입니다.

그 원인으로, 첨부서면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부족 혹은 의견청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등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 쌍방이 본 제도와 관련 입법취지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서, 의견청취를 포함한 서면첨부제도를 더 한층 보급·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8년6월13일부로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와 국세청이 합의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는 첨부서면 작성시의 유의점과 기준이 되는「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조사생략 통지의 구체적인 운용을 명기한 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사무운영지침에 대하여는, 2009년7월10일부터 실시되고, 새로이 도입된 문서에 의거 조사생략통지 비율에 관한 향후 동향의 근거로, 2009년도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소득세에 관하여는, 국세청 기타 행정기관의 통계 등에서 구체적인 실적이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건 관련 회답에 대하여는 보류하겠습니다.

세리사법 제33조의2 관련 서면첨부비율 (법인세)

항 목 \ 사무년도		2006사무년도	2007사무년도	2008사무년도
신 고 건 수	①	2,787천건	2,799천건	2,794천건
세리사관여건수	②	2,414천건	2,434천건	2,438천건
서면첨부건수	③	130천건	139천건	148천건
서면첨부비율	③ / ②	5.4%	5.7%	6.1%
의견청취비율	④	3.5%	3.4%	3.3%
실지조사 생략 비율	⑤	32.9%	29.3%	36.0%

(주)

1. 각 사무년도의 실적치에 대하여, 각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고, 제출된 신고서가 그 대상이다.
2. 의견청취 비율은, 서면첨부건수에 점하는 의견청취건수의 비율을 표시한다.
3. 실지조사생략 비율은, 의견청취건수에 점하는 실지조사를 생략한 건수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질문 3)

서면첨부제도 시행이 세리사 업계의 수익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 이는 곧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바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일본에서 세리사는, 사회적 역할을 높여 비즈니스 찬스를 증가시키는 한편, 세리사를 둘러싼 리스크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며, 본고의 주제인 서면첨부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세리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어떻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리사법에 규정된 세리사의 권리인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수익창출만이 아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가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첨부서면은 신고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납세자에 대하여 우리 세리사가 어떠한 방법에 의거하였는지, 또는 세무상의 문제점을 어디까지 검토하였는지, 관여 정도, 그 과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세리사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서 세리사가 거래처인 납세자에 대하여 적정한 신고지도가 충실해져, 그 결과 실지조사가 생략되고 간소화로 이어진 경우에는, 조사로 인한 어려움이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강화되면, 거래처와 계속 관계가 이어지며, 부차적인 효과입니다만 고도의 서비스 대가로서 고문보수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으며, 세리사 사무소(세리사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4)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도에 세리사법을 개정 시, 적용범위가 확충된 후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서면을 첨부한 업체는 5.7%에 불과하여 현재는 醸成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비약적으로 확충된 제도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2006사무 년도의 서면첨부비율은 5.4%로 세리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2007년 3월 23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국세청에 대하여「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하여, ①「예고하지 않은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 ②조사생략은 문서로 통지, ③의견청취와 실지조사와의 경계의 명확화, ④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일세련과 국세청간에「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이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뢰 주는 세리사제도 확립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의 원활화· 간소화에 기여하게 되어 양쪽에 많은 메리트가 있었으므로, ①이외의 요망사항이 받아들여져, 2008년6월13일「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사항은, ①첨부서면 양식의 개선 ②조사생략 통지관계 ③세무서 직원 및 세리사회 회원에 대한 홍보 ④국세국과 세리사회 및 세무서와 세리사회 지부와의 협의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의 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대하여는 2008년9월1일 이후부터「접수인」란 및「추가 기재사항」란 을 추가한 새로운 양식이 적용되었고, 2009년4월6일부터 국세전자신고· 납세시스템(e-Tax)에도 새 양식으로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②의 조사생략 통지에 대하여는, 본 합의사항 및 협의회와 WG(분과회)의 협의에 입각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양호한 첨부서면의 작성기준으로서「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조사생략 통지에 관련한「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1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호한 첨부서면에 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결과, 조사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리사등에게「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통지를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되었고, 본 제도의 운용면에서의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일세련에서는 서면첨부제도의 본격적인 보급· 정착과 원활한 조사생략통지를 위하여 세리사회 안에 상담창구, 또는 세무서와 세리사회 지부간 협의회설치를 추진중이며, 연수회개최와 홍보를 통하여 본 제도를 침투 시키는 여러 가지 대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

(질문 5)

지금 한국에서도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에「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라는 제도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금 그 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외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그 연구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면첨부제도 중 장점으로서 한국측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입니다.

(참고: 한국의「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예정)」란,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작업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검증을 받음으로, 세무조사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답변)

본고에 기재된 대로, 세리사가 서면첨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1970년 세리사법 개정 시 일본의「조세법률주의」와「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한 세리사법 제1조의「세리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인 동시에 적정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게 됩니다만,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세무 및 회계 모든 분야에서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 세리사들 입니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세리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충실한 신고지도,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정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고를 시인하거나, 실지조사를 생략하고,게다가 적정한 납세가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세리사가 관여함으로 실현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항목사항으로 열거해 보면

1. 세리사의 업무수준의 향상
2. 세리사의 책임범위의 명확화
3. 거래처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더한층 구축
4. 세무 및 회계에 관한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
5. 실지조사 생략에 따른 거래처 납세자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경감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귀국에서「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예정)」가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작업의 하나로서,중소기업의 경우 이른바「사전 검증」이 세무조사방식에 대신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와 관련한「실지조사 생략」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귀국의 성과에, 일본의 서면첨부제도가 좋은 지표가 되도록 강력하게 바랍니다.

参考資料および関係關法令

（日本）	書面添付制度の普及･定着合意文 （日税連/国税庁）	/ 178
（日本）	書面様式制定/法令解釈通達（日本語）	/ 181
（日本）	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税連）（日本語）	/ 192
	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税連）（韓国語）	/ 201
（日本）	国税庁長官/事務運営指針(法人税部門)（日本語）	/ 211
	国税庁長官/事務運営指針(法人税部門)（韓国語）	/ 219
（日本）	税理士法および施行令（日本語）	/ 226
	税理士法および施行令（韓国語）	/ 293

참고자료 1. 일본세리사연합회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문서, 2008년6월13일 합의·

2008년 6월 13일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 정착

1 양식관계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서면첨부 (이하「서면첨부」라 한다)의 양식 등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첨부서면의 양식에 세무서의 접수인 란 을 만든다.

② 첨부서면 양식의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또는「3 심사한 주된 사항」 란 의 기재요령을 개정한다.

③ 첨부서면 양식의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또는「3 심사한 주된 사항」 란 에 가급적 많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2 조사생략 통지관계

① 기재내용이 양호한 첨부서면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문서로 조사생략통지 (이하 「조사생략통지」라 한다)를 한다.

㈜ 다음의 경우 조사생략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 기재내용이 불량한 첨부서면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조사생략을 한 경우
- 첨부서면의 기재내용이 양호한 때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사생략 통지는 다음의 사항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한다.

가. 조사생략통지 실시요령(통지서 양식을 포함한다) 작성

나. 조사생략 통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리사회 안에 조사생략 통지관련 상담창구 등을 설치

다. 직원 및 세리사에게 서면첨부제도 및 조사생략 통지관련 사고방식등 주지

3 직원 및 세리사회 회원에 대한 홍보

국세당국 또는 일세련은, 서면첨부제도 및 조사생략통지실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등, 직원 및 세리사 회원에 대하여 그 보급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① 일세련에서는, 멀티메디아를 이용한 연수회 등으로 제도의 주지 및「한 명의 세리사가 한가지 세목의 서면첨부운동」을 추진

② 국세당국에서는, 회의· 연수 등을 활용하여 제도를 주지

4 기 타

국세국 또는 세리사회, 세무서와 세리사회 지부 간 서면첨부제도관련 협의회 실시

2008년 6월 24일

각 국 세 국 장
오키나와국세사무소장 귀하

국 세 청 장 관
(직인생략)

「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양식 제정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

2002년2월25일부 관총6-3외 11과 공동 「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양식 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에 대하여, 별지 「신구대조표」의 「개정 전」란에 게기 된 부분을 「개정 후」에 게기 된 부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08년9월 1일 이후부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취지)

세리사법 (1951년 법률 제237호) 제33조의2에서 규정한 서면양식에 접부인 표시를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日本) 添附書面 作成基準(指針)

制定 2009年 4月 1日
日本 稅理士會 連合會

一 글 머리에

세리사의 사명은, 세리사법 제1조에 규정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꾀하며, 이 사명에 따라 세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세리사의 존재의의를 가일층 높임과 함께, 나아가서는 세리사의 사회적 신뢰향상을 도모한다.

서면첨부 제도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첨부와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를 총칭한 것으로서, 2001년도에 세리사법을 개정할 때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가 신설됨에 따라, 서면첨부제도가 그 틀을 유지하면서 존재의식을 비약적으로 확충시켜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무전문가인 세리사의 권리로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계산하고, 정리하고, 상담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세리사법 제1조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도 이를 존중함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화· 원활화· 간소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기대된다.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는, 세리사회에서 검토·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국세청에 대하여 검토· 개선을 요망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2007년 4월에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정착에 대하여(요망)」이라는 제목의 요망서를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의거 일세련은 국세청에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에 관한 협의회 설치를 제의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정착에 관한 협의회」에서 협의 결과, 각 조직에서 기관결정을 거쳐 2008년 6월13일에 구체적인 대처사항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은, 이러한 합의에 의거 개정된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첨부서면을 작성할 때의 지침으로서 일세련에서 작성한 것이며, 세리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첨부서면을 작성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二 첨부서면 작성시 유의점

1 서면첨부는 어디까지나 세리사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의 위촉계약에 근거하며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2 세리사의 관여 정도와 확인사항을 명시하고, 신고서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것이며, 신고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3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해 행한 업무의 결과는 신고서에 반영되지만, 첨부서면은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4 서면의 1~5란은, 계산, 정리 및 상담한 사항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이들 란에 전부 기재가 없는 것은,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三 첨부서면의 양식에 대하여

1 제9호 양식의 서면에 대하여

신고서의 작성과정에 있어 세리사가 행한 업무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이다.

양식 1면의 「자신들이 작성기입한 장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는,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위촉계약에 근거 자신들이 작성한「장부서류의 명칭」및「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을 기재한다. 여기서 관여한 정도를 명시하게 된다.

2면의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의 란에는 계정과목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계산·정리시 유의한 사항을 기재하며, 3면의 「상담한 사항」란에는, 위촉계약에 의거 행한 세무상담 중, 그 신고서의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사항과 상담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기재한다.

이 2면의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란 및 「기타」란 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서면은 이 기준에 따른 서면이 아님을 유의 한다.

2 제10호 양식의 서면에 대하여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이를 심사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으로서, 그 기재사항은 「상담 받아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양식 1면의 「심사할 때 제시 받은 장부서류」란 에는 확인한 장부서류의 명칭을 표시하며, 2면 및 3면의 「심사한 주된 사항」란 과 「심사결과」란 은 세리사가 어떤 심사를 하였는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세무전문가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란 이다.

이 2면의「심사한 주된 사항」란 및 3면의「심사결과」란 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서면은, 이 기준에 따른 서면이 아님을 유의 한다.

四 구체적인 작성기준

1 총론

신고서의 작성(심사)등을 함에 있어, 계산하고 정리·상담한 사항이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장부와 서류에 근거하여 어떻게 계산·정리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계산,정리한 주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서류나 장부에 근거하여 어떻게 확인 하였는가
- 심사한 주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서류나 장부에 근거하여 어떻게 확인(심사)하였는가
-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한 증감사항이 보이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었인가
-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경 되었는가
- 상담사항에 대하여 어떤 상담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지도 및 확인을 하였는가
-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 한다.

2 각론

제9호 양식을 작성할 때, 해당 란 기재 시 유의할 사항 및 확인·검토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로 계산하고 정리하거나 상담한 사항에 대하여 종목별 예시를 참고로 하여, 해당되는 란 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10호 양식에 대하여도 다음 사항을 준용하여 심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소득세 및 법인세

(1면)서류작성시 기초서류

의뢰자가 작성한 장부서류 중, 제시된 서류를 기재한다.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는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어떤 서류에 근거하여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유의한다.

(2면)3.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

(1)매출(수입)

계산기준, 결제기준, 입금관리상황에 따라 매출누락이 없는지 확인

매입(원가)

매입, 매출원가에 대하여 장부 외에 청구서 및 영수증 등도 확인
기간손익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매출, 매출원가에 대하여 결산후의 매출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
매출, 매입, 재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재고자산(저장품)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원시기록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재공품 및 미성공사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적정성여부 확인 및 미성공사의 경우 공사대장에 의거 현장별 적정성 여부를 확인

사업주계정

가사관련 비용의 계상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비용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확인

급여(보수)

전종자의 급여는 신고서의 범위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확인

기타과목

업종 및 사업의 특이성에 따른 주된 과목의 사항을 확인

소모품비

고정자산 해당여부를 확인

여비교통비

여비의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및 장부류의 보존상황을 확인

복리후생비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확인

교제비

교제비등의 유사한 과목과 거래내용을 확인

고정자산, 수선비

현장확인 후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의 구분여부를 확인

감가상각비

내용 검토 후, 상각의 대상인지 또는 경비의 대상인지를 확인하며 특별상각의 대상여부를 확인

고정자산 제각손실

소비세와 연동, 제각손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기타

기타과목에 대하여도 내용을 확인

(2) (1)중 현저한 증감사항

- 당기 매출의 증감 및 원가계정(이익율)의 증가 및 저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
- 현저한 증감이 있는 계정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3) (1)중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

- 어떤 이유에서 왜 변경하였는가 및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3면) (4)상담한 사항

- 상담 및 지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그 자초지종을 기재함으로 적정한 지도가 되도록 한다

(5)기타

- 종합의견을 기재한다. 납세자와 세리사의 관여상황을 기재함으로,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레벨과 기장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계산 및 정리한 사항, 주된 증감사항, 회계처리방법의 변경과 상담한 사항에서 기재 아니한 경우와 과정을 명시하는 등 어필하는 란 도 있다.

  한편, 항목전반에 걸쳐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확인한 사항도 기재

(2)소비세

(2면) 3, 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

(간이과세)

과세매출금액

공제 및 상쇄한 항목에 대하여 매출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또한 잡수입 및 새 상품을 구입시 구입대금 중 본인의 재고상품을 제공하고 차액만 지급 시 대체한 상품대금의 매출 계상 여부를 확인

과세구분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구분은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확인

간주매입율

원칙대로 가중평균법으로 산출 되었는지 또는 75%의 률과 비율은 검토 되었는지를 확인

(원칙적 과세)

과세매출 및 비과세 매출

과세매출, 비과세매출, 불과세매출 및 과세매출 비율의 확인 여부

과세거래의 판정

혼동하기 쉬운 거래는 증빙서류로서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

각 과목

착오 많은 과목에 대하여 명세서 등을 검토하였는지 확인
(교제비, 회비, 경유거래세, 중고품 재활용료, 골프장 이용세 등)

(2) (1)중 현저한 증감사항

- 과세매출 비율의 증감 등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는가

(3) (1)중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 세금포함 경리방식에서 세별도 방식으로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

(3면) (4)상담한 사항

- 개정소비세에 의거 간이과세 및 원칙적 과세의 판정의 설명,지도 계산방법의 설명과 예정납세의 모의실험 등 납세자가 적절한 조언에 따라 이해 하였는지와 다음 기 에서도 적절한 지도가 있었는가

(5)기타

- 과세방식과 경리처리방식의 설명, 신고서의 검토 및 확인, 과세 및 비과세거래의 거래마다 체크사항의 검토 및 확인, 장부 및 청구서의 보존상황은 확인하였는지 기타 종합의견 등 관여한 사항

(3)상속세

(1면)서류작성시 기초서류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며, 확인작업의 기초가 된다.

(2면) 3. 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

토지 및 가옥(평가)

평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상황을 확인한 사항과 실측 등에 따른 계산근거를 기재 하였는가

유가증권

(상장주식)

단주, 현물보유주식, 선조나 가족명의 주식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였는가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계산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사항과 계산근거를 기재 하였는가

예금 및 저금 등

가족명의 예금의 귀속문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판단 근거를 기재 하였는가 또한, 미수이자는 계산되었는가

그리고, 예저금 및 현금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정도 거액의 거래를 확인 하였는가

게다가, 상속개시 직전 현금으로 거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하며 잔액은 수중 현금으로 계상 하였는가

계속 상속 및 선대로부터 상속관계

이전의 상속으로부터 재산의 흐름을 검토하고 확인 하였는가

사업용 재산

사업용 재산 또는 농업용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결산서와 확

인 하였는가

가정용 재산

가정용재산의 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생명보험금 및 퇴직수당 등

생명보험금 및 관련된 권리를 확인 하였는가 또한, 계약자와 보험료 부담자도 확인하였는지

퇴직수당 및 조의금 등,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기타재산

- 미수금(급여, 배당, 연금,지대等) 및 대부금, 전도금의 유무를 확인
- 정원설비, 자동차, 오트바이 및 선박 등의 유무를 확인
- 귀금속, 서화, 골동품 및 전화가입권의 유무를 확인
- 특허권, 저작권과 영업권 등의 유무를 확인
- 수확하지 아니한 농산물 등의 유무를 확인
- 소득세(확정신고 및 준 확정신고)의 환급금의 유무를 확인

상속세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세의 정산여부를 확인
-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의 유무를 확인

채무 및 장례비용

- 차입금의 유무를 확인(연대채무 및 보증채무를 포함한다)
- 미납부한 세금 등의 유무를 확인
- 예치보증금(대지) 등의 유무를 확인
- 상속을 포기한 자가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하였는지 확인
- 법요나 부의금 답례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가 확인
- 묘비나 불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가 확인

(3면) 4 상담한 사항

구체적으로 상담한 사항과 그 전말을 기재

- 소규모 택지 등(특례)의 적용
- 3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 차명재산의 귀속
- 동족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및 조의금

- 납세관계 지도사항과 그 전말
- 납세유예(주식, 토지)의 특례적용

5 기타
- 종합의견
- 상속인의 의뢰관계
- 상속재산을 확정하기까지의 경위
- 기타 항목의 업무체크리스트 또는 국세청 양식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

(4)증여세

(1면) 서류작성시 기초서류
- 증여재산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며, 내용 확인 및 가격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2면) 3. 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
-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
- 적용항목의 특례규정을 확인

  상속시 정산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동 (주택취득을 위한 금전 증여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유예(주식, 토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 증여재산의 내용확인 사항과 과세할 때의 내용 및 평가계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계산근거를 기재 하였는가를 확인

(3면) 4. 상담한 사항
- 상담한 사항 및 세리사가 적용할 항목을 검토하고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5. 기타
- 납세자가 의뢰한 사항과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적용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례·제도의 취급, 서류 등(신고서류 포함)의 보관에 대한 설명 기타 종합의견

(5)소득세(분리양도)

(1면)서류작성시 기초서류

-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비용과 각 조치법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서류다.

(2면) 3. 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

- 양도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그 계산근거가 기재되어 있는가
- 양도소득 특례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검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3면) 4. 상담한 사항

- 납세관련 지도사항과 특례 적용시 연장 등 설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5. 기타

- 세리사가 상담 후 적절히 지도하고, 기초자료의 확인이 가능하여 적정성을 볼 수 있다. 종합의견 등
- 각 조치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였는가

이상

官總 6-37
2009年 4月 1日

各 國 稅 局 長　　前

國 稅 廳 長 官

法人課稅 部門의 書面添附 制度의 運用에 즈음하여 基本的 思考方式 및 事務節次 等에 對하여(事務運營指針)

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2009년 7월 10일 이후, 이 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한다.

2002년 3월 14일부로 課法3-6 이외 7課 공동 「세리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인과세 부문의 서면첨부 제도의 운용에 즈음하여 기본적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사무운용지침)는, 2009년 7월 1일로서 폐지한다.

(취지)

서면첨부제도(세리사법(1951년 법률 제237호, 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1년도 개정됨에, 종래의 경정전의 의견진술에 더하여, 법제33조의2의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통지할 때에, 그 통지 전에 법 제30조의 서면(이하 「세무대리 권한증서」라 한다.)을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하 「세리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같다.)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세무집행을 보다 원할 하고 간소화로 가기 위하여는, 서면첨부제도를 보다 더 보급, 정착을 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이하「일세련」이라 한다.)와 협조하여 이 제도의 보급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이 보급책의 하나로서, 일세련에서는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을 만들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는 법제35조 제1항에 규정한 의견청취 (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한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리사 등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서면에 의거 통지 함으로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記

第1章 書面添附制度의 運用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思考方式

1 制度의 適正 • 圓滑한 運用 및 普及 • 定着을 推進

서면첨부제도는 세무대리를 하는 세리사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러 세리사 등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이 신고서가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도와주며, 세무당국이 세무전문가인 세리사 등의 입장을 보다 존중하고, 세무집행의 원활화 및 간소화에 이바지하는 취지 임으로,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이 취지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원활한 운용을 하여,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도모한다

2 書面添附制度 適用法人의 適切한 管理

신고서(법인세 확정신고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확정신고서 또는 간접제세 납세신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법인(간접제세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관리부 등을 활용하고 과거의 실적 및 조사실적과 더불어 자료정보를 덧붙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 및 세리사 등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한다. 이때 상황구분의 정도는 첨부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書面添附制度를 活用한 調査事務의 效率的運營

첨부서면은, 신고서의 심사나 준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 첨부서면의 기재사항 중 확인을 요하는 부분은 의견 청취시에 청취한다.

또한, 서면첨부 제도는 세무당국이 세무전문가인 세리사 등의 입장을 보다 존중하고 세무집행을 보다 더 원활하고 간소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이 그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조사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조사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

第2章 書面添附制度 關聯事務의 節次 및 留意事項

第1節 添附書面이 있는 申告書의 回附後의 事務

내부담당자로부터 신고서를 교부 받은 통괄관(법인과세 부문의 특별국세조사관, 통괄 국세조사관, 특별조사 정보관, 국제세무 전문관, 정보기술 전문관 또는 심리전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첨부서면의 첨부가

있는 신고서에 첨부된 세무대리 권한증서가 여러 세목(소비세, 원천소득세는 제외)에 걸쳐 세무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복사 및 세무대리 권한증서의 복사를 담당하는 부문에 회부한다.

第2節 意見聽取의 實施

1 事前通知 前 意見聽取 實施

통괄관은, 신고서에 첨부서면이 첨부된 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지시할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 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조사담당자에게 지시한다.

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의 1면 「1 자기들이 작성 기입한 장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란 부터 3면 「5 기타」란에 전부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첨부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어도 보정의뢰 의견청취 등을 할 필요가 없음에 유의한다.

㈜ 첨부서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KSK에 입력된 신고실적의 廳지정 코드를 정정하여야 한다.

2 意見聽取의 時期 및 方法

조사담당자는, 사전통지 예정일의 1주일부터 2주일 전 까지 세무대리 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의견청취를 하는 뜻을 구두(전화)로 연락하고, 의견청취 일시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사전통지 예정일의 전일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세리사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한다. 또한 첨부서면의 「사무처리란」에 의견청취를 한 뜻을 통지한 날 및 사전통지 예정일을 기입한다.

㈜ 1. 세리사 등이 원격지에 있는 경우 등,세무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통괄관과 실지조사 지시를 받은 조사담당자가 한다.

3 意見聽取의 內容

의견청취는 세무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하여 부여된 세리사 등의 권리의 하나로서 여겨지며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 등이 신고에 즈

음하여 계산 등을 한 사항에 관한 것과 의견청취 전에 발생한 의문점을 해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근거로 하면서 의견청취에 의거 의문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사에 이르지 않게 되어 득이 됨을 인식하고, 예를 들면, 현저한 증감사항과 그 이유,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이 있었던 사항과 변경의 이유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리사항에 대하여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의 한다.

또한, 경정이나 수정신고를 종용하기는 아니하나, 사후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관에 관하여 지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 청취 시 그 지도사항에 대하여 세리사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意見聽取後의 事務

조사담당자는, 의견청취 후 다음사항을 별지 1의 서면(이하 「응접부」라 한다.)에 기재하여 통괄관의 결재를 얻고, 법인세 이력표(간접제세의 경우 간접제세 조사부)에 편철 한다.

① 상대방, 응접자, 조사대상 법인명, 응접방법, 응접일시
② 의견을 청취한 내용
③ 의견청취 결과 세리사에 대하여 지도한 사항
④ 조사대상 선정여부
⑤ 별지 2의 서면(이하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라 한다.)의 송부여부
⑥ 기타 참고사항
㈜ 의견청취결과 통지문을 작성할 경우, 응접부와 함께 결재 받음

5 意見聽取結果를 稅理士에게 連絡

의견청취를 한 결과,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리사에게「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뜻을 원칙적으로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문서로 연락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두(전화)로 연락 한다.

구두(전화)로 의견청취 결과를 세리사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송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후 첨부서면의 적절한 기재가 되도록 지도한다

① 과세상 지도사항 필요한 것과 또는 경정이나 수정신고의 종용사

항은 아니나, 사후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한 사항이 있는 것

② 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의 2면「3 계산 및 정리한 주된 사항」란 및 3면「5 기타」란 또는 법 제33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첨부서면의 2면「3 심사한 주된 사항」란 및 3면「4 심사결과」란에 기재가 없는 것

③ ②에 게기된 각 란에 기재는 되어 있으나,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는 등 ②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

㈜ 1 세리사에게 「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고 통보한 경우에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조사가 가능하다.

2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 한 경우, 그 사본(세무서 사본)을 법인세 이력표에 편철 한다.

6 **意見聽取 後 修正申告書가 提出된 境遇의 加算稅 問題**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 및 2000년7월3일부 課법 2-9외 3課 공동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의 취급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 및 2000년7월3일부 課消 2-17외 課 공동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경정 및 가산세의 취급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및 2001년3월29일부 課消 4-1외 1課 공동 「담배세 및 주세의 가산세 취급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에 의거 비위사항이 있었는지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경정 예정통지」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 시 구체적인 비위사항이 있다고 지적되어「경정 예정통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7 **更正 前 意見聽取**

첨부서면이 첨부된 신고서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세리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應 接 簿 (意見聽取用)**

1 **使用目的**

「응접부 (의견청취용)」는, 세리사법 제35조에 의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세리사에게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 응답한 내

용 및 「의견청취 결과 통지문」의 송부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2 記載要領

항 목	내 용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문의 송부여부	의견청취결과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 「의견청취 결과통지문」을 송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要口 」란에 체크하며, 송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否口」란에 체크 한다.
적 요	의견청취결과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전말 및 「의견청취 결과통지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이유, 기타 세리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는 외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 한다.

㈜ 「의견청취 결과통지문」의 송부를 요구 받은 경우,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局 법인과세과로 문의한다.

(2)意見聽取結果 通知文

별지 2

제 호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재무사무관 印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세무행정에 대하여 평소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름 아니옵고, 아래 납세자의 신고서에 첨부된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로부터 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한 결과, 당해 납세자와 관련된 신고(세)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으며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신고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는 다시 한번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記

납세자명 _____

납 세 지 _____

담당자	

전화 0000-00-0000
구내 ( )

日 本 의 稅 理 士 法

(1951 年 6 月 15 日　法律 第 237 号 制定)

(最終改正　2007 年 6 月 27 日 法律 第 96 号)

第 1 章　　總則

(稅理士의 使命)

第 1 條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신고납세 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함을 사명으로 한다.

(稅理士의 業務)

第 2 條　세리사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조세(인지세, 등록면허세, 관세, 법정외보통세(지방세법 제 13 조의 3 제 4 항 [강제환가경우의 道郡담배세등의 징수]에 규정한 道郡 법정외 보통세 및 市區 법정외 보통세를 말한다.)법정외 목적세(동항에 규정된 법정외 목적세를 말한다.)기타 政令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행함을 업으로 한다.

一稅務代理(세무관공서(세관관청을제외하고, 국세불복심판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령 혹은 행정불복심사법(1962 년 법률제 160 호)의 규정에 의거신고, 신청, 청구 혹은 불복신청(이를 기준으로 政令에 정해진 행위를 포함하며, 주세법(1953 년 법률 제 6 호)제 2 장의 규정에 관한 신고, 신청 및 불복신청을 제외한다. 이하 [申告等]이라 한다.)을 할때 또는 신고등 혹은 세무관공서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해 세무관공서에 대하여 하는 주장 혹은 진술을 할 때에 대리하며 또한 대행하는 것(2 호의 세무서류의 작성에 규정된 것은 제외)을 말한다.)

二. 稅務書類의 作成(세무관공서에 대하여 신고등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불복신청서,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한편 세무관공서에 제공하는 서류(작성에 대신하여 電磁式記錄(電子的方式,

磁氣的方式, 기타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에 제공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제 32 조[조사통지]에 있어서도 같다.)을 작성하는 경우의 당해 電磁的 기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에 있어서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것(이하 [신고서등]이라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三. 稅務相談(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등, 제 1 호에 규정된 주장 혹은 진술 또는 신고서등의 작성에 관하며, 조세의 과세표준등(국세통칙법(1962 년 법률 제 66 호)제 2 조 6 호 1-6[정의]까지 게재된 사항 및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리사는 전항에 규정된 업무(이하 「세리사업무」라 한다.)외, 세리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며, 세리사 업무에 부수하여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 二항의 규정은 세리사가 타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제 48 조의 2 [설립]에 규정된 세리사 법인을 말한다. 다음 章, 제 4 장 및 제 5 장에 있어서도 같다.)의 보조자로서 이들 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第 2 條의 2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하고, 진술 할 수 있다.

2. 전항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稅理士의 資格)

第 3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제 一호 또는 제二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사무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에서 政令에서 정해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2 년이상 되어야 한다.

一. 세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二. 제 6 조{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에 정한 시험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제 7 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또는 제 8 조 [세리사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시험을 면제 받은자

三.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四.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2. 공인회계사법(1945 년 법률 제 103 호)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업무를 함이 가능한 자는 그 법률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로 간주한다.

(缺格條項)

第 4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리사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一. 미성년자

二. 成年 被後見人 또는 被保佐人

三.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四.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자로,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五.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자 또는 國稅犯則取締法(1900 년 법률 제 67 호)(지방세법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혹은관세법(1954 년법률 제 61 호)(ton 세법(1957 년 법률제 37 호) 및특별 ton 세법(1957 년 법률 제 38 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과표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계되는 통고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자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된 날 또는 그 통고처분의 이행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六.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및 그 법률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따 라 禁錮이상의 형에 처한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七. 징계처분에 따라 세리사 업무가 금지된 자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八. 국가공무원법(1947 년 법률 제 85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1950 년 법률 제 261 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九. 변호사법(1949 년법률제 205 호)혹은 외국변호사에 의거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1986 년 법률 제 66 호),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2000 년 법률 제 49 호), 사법서사법(1950 년 법률 제 197 호), 행정서사법(1951 년 법률 제 4 호), 사회보험노무사법(1968 년 법률 제 89 호) 또는부동산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1963 년 벌률 제 152 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에서, 변호사회로부터 제명, 공인회계사의등록말소,변리사, 사법서사 또는 행정서사의 업무금지, 사회보험노무사의 실격처분 혹은 부동산감정사 또는 부동산감정사補의 등록말소 처분 을 받은자로 이들의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이들 법률규정에 따라 재차 업무를 영위함이 가능하게된 자를 제외한다.)

十. 세리사의 등록을 거부당한자 중 제 22 조 제 4 항[등록에 관한 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또는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등록취소]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의 등록이 취소 된자로, 이들의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第 2 章 稅理士試驗

(受驗資格)

第 5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一. 다음에 게재된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 년이상 되는 자

1. 세무관공서 에서의 사무 또는 기타의 관공서에서 국세(관세, ton 세및 특별 ton 세를 제외한다. 제 24 조, 제 36 조, 제 41 조의 3 및 제 46 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혹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

2. 행정기관에서 政令에서 정한 회계검사, 금융검사 또는 회사 기타 단체의 경리에 관한 행정사무

3. 은행, 신탁회사(신탁업법(2004 년 법률 제 154 호)제 3 조 또는 제 53 조 제 1 항의 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금융업무를영위하는 법인에서 政令에서 정해진 貸付 기타 자금의 운용(貸付처의 경리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인(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특별회계를 포함한다.)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회계에 관한 사무에서 政令에서 정해진 것

5. 세리사 혹은 세리사법인, 변호사 혹은 변호사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혹은 감사법인의 업무보조 사무

6.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기타 政令에서 정한 법률상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

二. 학교교육법(1947 년 법률 제 26 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들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修學한자 또는 동법 제 5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자로,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수학한자

三. 사법시험에 합격한자

四. 공인회계사법 제 8 조 제 1 항에 규정한 공인회계사 시험의 단답식 시험에 합격한자또는 당해 시험을 면제 받은자(당해 시험의 시험과목 전부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 받은자를 포함한다.)

五. 국세심의회가 법률학 또는경제학에 관하여 전二호에 게재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전항 제一호에 게재된 사무 또는 업무의 2 이상에 종사한 자는, 이들 사무 또는 업무의 2 이상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 경우에, 그 기간이 3 년 이상 될 때에는 세리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3. 전 2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 1 항 제一호에 게재된 사무 또는 업무에 비슷한 사무 또는 업무로서 국세심의회의 인정을 받은 사무 또는 업무는, 동호에 게재된 사무 또는 업무로 간주한다

4. 제 1 항 제五호 및 전항에 규정된 국세심의회의 認定절차에 대하여는, 재무성令에서 정한다

(試驗目的 및 試驗科目)

第 6 條 세리사 시험은 세리사로서 필요한 학식 및 그 운용능력을 가진가의 여부를 판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 정하여진 과목으로 한다

一. 다음에 게재된 과목(1-5 까지 게재된 과목은 국세통칙법, 기타 법률에 정해진 당해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ㄱ세법에 속하는 과목ㄴ이라 한다.)중 3 과목 선택. 다만, 1 또는 2 중에서 1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법
4. 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중 택일
5. 국세징수법
6. 지방세중 道세 및 市區민세(특별구민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 또는 지방세법중 사업세에 관한 부분의 1 과목
7. 지방세법중 고정자산에 관한 부분

二. 회계학중 簿記論 및 재무제표論의 2 과목(이하ㄱ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이라 한다.)

(試驗科目의 一部免除等)

第 7 條 세리사 시험에서 시험과목중 일부과목에 대하여 政令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자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후에 치러지는 세리사 시험에서 당해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 세법에 속하는 과목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것(이하 본항 및 다음조 제 1 항 제一호에서 ㄱ세법에 속하는 과목ㄴ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에서, 석사학위(학교교육법 제 104 조에 규정한 학위를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一항 에서도 같다.) 또는 동법 제 104 조제 1 항에 규정된 文部科學大臣이 정한 학위로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것을 수여 받은 자로 세리사 시험에 있어 세법에 속하는 과목의 어느 1 과목에 대하여 政令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가, 당해 연구가 세법에 속하는 과목등에 관한 것과 국세심의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당해 1 과목 이외의 세법에 속하는 과목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해진 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3.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것 (이하 본항 및 다음조 제 1 항 제二호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에서 석사학위 또는 학교교육법 제 104 조 제 1 항에 규정된 文部科學大臣이 정한 학위로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것을 수여 받은 자로 세리사 시험에 있어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의 어느 1 과목에 대하여 政令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가, 당해 연구가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것과 국세심의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당해 1 과목 이외의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대하여, 제 1 항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해진 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세리사 시험의 시함과목 중 시험과목에서 없어졌던 것에 대하여 제 1 항에 규정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 당해 과목은 전조 제一호에 게재되어 있는 시험과목으로 간주한다.

5. 제 2 항 및 제 3 항에 규정된 국세심의회의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재무성令에서 정한다

第 8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세리사 시험에서 당해 각호에 게재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一. 대학등(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또는 동법 제 104 조 제 4 항 제 2 호에 규정한 대학 혹은 대학원에 상당하는 교육실시과정이 설치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다음 호 에서도 같다.)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의 교수, 准교수 또는 강사직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하여 3 년 이상 되는 자 및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二. 대학 등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의 교수, 准교수 또는 강사직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하여 3 년이상 되는 자 및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등에 관한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三. 공인회계사법 제 3 조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동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의 논문식에 의한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四. 관공서에서의 사무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혹은 주세 부과 또는 이들 국세에 관한 법률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 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五. 관공서에서 국세에 관한 사무 중 전호에 규정한 사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 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六. 관공서에서의 사무 중 道民세, 區民세(특별구민세를 포함한다.), 사업세 혹은 고정자산세의 부과 또는 이들 지방세에 관한 법률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 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에 관한 것

七. 관공서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중 전호에 규정한 사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 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과목 중 지방세에 관한 것

八. 제六호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 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九. 제七호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0 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十. 다음에 게재된 자로, 관공서에서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혹은 감독하는 직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고도의 지식 혹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으로 재무성令에서 정해진 것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5 년 이상 되는 것 중, 국세심의회가 지정한 연수(재무성令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연수 중, 국세심의회가 세리사 시험의 시험과목 중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대하여 전조 제一항에 규정한 성적을 받은 자가 가진 학식과 같은 정도의 것을 습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것을 말한다.)를 수료한자에 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1.제 四호에서 제六호 까지 규정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3 년 이상 되는 자.

2. 제 七호에 규정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8 년 이상 되는 자

3. 1 에 규정된 기간을 통산한 연수의 23 분의 28 에 상당하는 연수와 2 에 규정된 기간을 통산한 연수를 합한 연수가 28 년 이상 되는 자

2. 전항 제一호 또는 제四호부터 제九호까지 규정한 직 또는 사무 중,시험

면제 과목이 같은 직 또는 사무의 2 이상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직 또는 사무에 대하여 이들 호에 규정한 연수를 10 년으로 하는 비율에 따른 연수를 환산하여 이들의 직 또는 사무의 2 이상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10 년이상 되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세리사 시험에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제一호 또는 제八호 혹은 제九호에 규정한 직 또는 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 또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세법에 속하는 과목중 국세에 관한 것 또는 지방세에 관한 것의 어느 것을 면제하는 타 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통산할 수가 있다.

(受驗手數料等)

第 9 條 세리사 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政令에서 정한 금액의 수험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제 7 조 제二항 또는 제三항[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政令에서 정한 금액의 인정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세리사 시험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合格取消等)

第 10 條 국세심의회는, 부정한 수단에 의거 세리사 시험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2. 국세심의회는, 제 7 조 제二항 혹은 제三항[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의 규정에 따른 인정 또는 제 8 조 제一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결정한 후, 당해 인정 또는 면제를 받은자가 허위 또는 부정사실에 근거하여 인정 또는 면제를 받은 자로 판명된 때에는, 그 인정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가 있다.

3. 국세심의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3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리사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合格證書等)

第 11 條 세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2.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하여, 政令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준성적 이상 받은 과목을 통지한다.

(試驗執行)

第 12 條 세리사 시험은 국세심의회가 행한다.

2. 세리사 시험은 매년 1 회 이상 행한다.

(試驗細目)

第 13 條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이외에, 세리사시험(제 8 조 제 1 항 十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포함한다.)의 집행에 관한 자세한 세목에 대하여는, 재무성令에서 정한다.

第 14 條-第 17 條 削除

第 3 章 登錄

(登錄)

第 18 條 세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리사가 되기 위하여는, 세리사 명부에, 재무성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칭 및 주소지 기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稅理士名簿)

第 19 條 세리사 명부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비치한다.

2. 세리사 명부의 등록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행한다.

3.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제 1 항의 세리사 명부를 磁氣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해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제 41 조[장부작성의무] 및 제 48 조의 10 [성립신고等]에 있어서도 같다.)로 제작할 수 있다.

(變更登錄)

第 20 條 세리사는, 제 18 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登錄申請)

第 21 條 제 18 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에 규정된 사항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신청서를, 제 3 조 제 1 항 각호[세리사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성令에서 정한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그 사본 3 부를 첨부하며, 동 항의 세리사회는 당해 신청서를 수리한 때, 지체 없이 당해 사본 1 부씩을 당해 신청자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 및 당해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구(특별구 및 全部事務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道의 長에게 송부한다.

(登錄에 關한 決定)

第 22 條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수리한경우에,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 자격이 있으며, 제 24 조[등록거부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때에는, 세리사 명부에 등록하며,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 자격이 없으며, 또한 동 조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 관련자는 등록을 하려고 할 때에, 또는 등록을 거부 하려고 할 때에, 제 49 조의 16[자격심사회]에 규정된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때 에는, 사전에 당해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상당기간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명부에 등록한 때에는, 당해 신청자에게 세리사 증표를 교부하고,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 서면으로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때,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 자격 또는 제 24 조 각호에 규정된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일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시 그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國家와 日本稅理士會 連合會間의 通知)

第 23 條 세무서장 및 시.구.도의 長은, 제 21 조 제 1 항[등록신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세리사 자격이 없고, 또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그 사실을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통지한다.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청장관 및 당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및 도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登錄拒否事由)

第 24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 등록을 할 수 없다.

一. 징계처분에 따라, 변호사. 외국법 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혹은 사회보험 노무사의 업무가 정지된자 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5 조에규정한 감정평가등업무(제 43 조에서「감정평가등업무」라 한다.)가 금지된 부동산 감정사로 현재 그 처분을 받고 있는 자

二. 公職(국회 또는 지방공공 단체의 의회 의원직 및 비상근 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자

三. 부정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혹은 면할려고 하거나, 또는 면제 받게 하거나, 혹은 면제 받게 하려고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四. 부정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환급 받거나, 혹은 환급 받을려고 하거나, 또는 환급 받게 하거나, 혹은 환급 받게 하려고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五. 국세 혹은 지방세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刑罰法令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六. 심신장애로 인하여 세리사 업무를 적정하게 할 수 없는 자

七.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 외 세리사의 직책에 비추어 세리사로서 적격성을 결한 자

(登錄拒否 당한 때의 審査請求)

第 24 條의 2 제 22 조 제 1 항(등록에 관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 당한 자가 당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행정불복 심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 21 조 제 1 항[등록신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 월이 경과 하여도 당해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거부 당한 것으로 보며,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전항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가 있은 날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전 2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 22 조 제 4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국세청장관은 재결서에 그 뜻을 부기 하여야 한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할 때에 국세청장관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登錄取消)

第 25 條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세리사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 49 조의 16[자격심사회]에 규정한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一. 세리사 자격 또는 제 24 조 각호[등록거부사유]에 규정한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 21 조 제 1 항[등록신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당해 등록을 한자인 것이 판명된 때

二. 제 24 조 제六호에 규정된 자에 해당될 때

三. 2 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불분명 한 때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전항 제一호 또는 제二호 중 하나에 해당됨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 서면으로 그 뜻을 당해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전조 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 당한 자에게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登錄抹消)

第 26 條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세리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一. 그 직무를 폐지한 때

二. 사망한 때

三.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四. 전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제 4 조 제二호부터 제九호[결격사유]까지의 하나에 해당된 때, 기타 사유에 따라 세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

2. 세리사가 전 제一호, 제二호 또는 제四호의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해당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登錄 및 登錄抹消의 公告)

第 27 條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세리사 등록을 한 때 지체 없이 그 뜻 및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官報로 공고 하여야 한다.

(稅理士 證票의 返還)

第 28 條 세리사 등록을 말소 당한 때에는, 그 해당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세리사 증표를 일본세리사 연합회에 반환 하여야 한다. 세리사가제 43 조[업무정지]의규정에해당한 때 또는 제 45 조[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혹은 제 46 조[일반징계]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전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한 세리사가 세리사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세리사 증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登錄細目)

第 29 條 이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 등록수속, 등록말소, 세리사 명부, 세리사 증표 기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성令에서 정한다.

第 4 章　稅理士의 權利 및 義務

(稅務代理의 權限明示)

第 30 條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할 때에,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무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特別委任을 要하는 事項)

第 31 條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할 때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임을 받아야한다

一. 불복신청의 취하

二. 대리인의 선임

(稅理士 證票 提示)

第 32 條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세무대리를 할 때에, 당해 세무대리인에 관계되는 세리사가 세무관공서의 직원과 면접할 때에, 세리사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署名捺印 義務)

第 33 條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세무대리를 할 때에, 조세에 관한 신고서등을 작성하여 세무관공서에 제출할 때에, 당해 세무대리인에 관계되는 세리사는, 당해 신고서등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신고서등이 조세의 과세표준등에 관한 신고서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청구에 관한 서류인 때에는, 당해 신고서등에는, 병행하여 본인(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세무서류를 작성할 때에, 당해 세무서류의 작성에 관계되는 세리사는, 당해 서류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세리사는, 전 2 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을 할 때에는 세리사의 의견,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 유무는, 당해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 1 항 후단의 규정은, 법인세법(1965 년 법률 제 34 호) 제 151 조[대표자 등의 자필서명날인] 또는 지방세법 제 72 조의 35[법인의 대표자 등의 자필서명날인의무]의 적용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計算事項, 審査事項等을 記載한 書面의 添附)

第 33 條의 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국세통칙법 제 16 조 제 1 항 제一호[납부하여야 할 국세의 확정방식]에 게재된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八호 혹은 제 十一호[용어]에 게재된 신고납부 혹은 신고납입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전항에 규정한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타인이 작성한 것을 상담받아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성되었다는 뜻을 재무성令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3.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전 2 항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서면에 세리사의 의견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부기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調査通知)

第 34 條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신고서에 관계되는 조세에 관하여 사전에 그 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그 장부서류(그 작성 또는 보존에 대신하여 電磁的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電磁的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할 경우에, 당해 조사에 관하여 제 30 조[세무대리 권한명시]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그 조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意見聽取)

第 35 條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 33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에 규정한 서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관계되는 조세에 관하여 사전에 그 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 30 조[세무대리의 권한명시]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통지를 하기 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2. 서면이 첨부 되어있는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할 경우에,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경정의 기인이 되는 사실을 세리사가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혹은 상담에 응하며 또는 심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당해 경정이 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당해직원의 조사에 기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혹은 국세국장)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등을 계산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 또는 계산착오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불복 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당해 불복신청에 관하여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4. 전 3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유무는, 이들 규정에 규정된 조사에 관한 처분, 경정 또는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 혹은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脫稅相談等의 禁止)

第 36 條 세리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혹은 지방세의 부과 혹은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혹은 지방세의 환급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상담에 응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信用失墜行爲의 禁止)

第 37 條 세리사는,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秘密維持義務)

第 38 條 세리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리사 업무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리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會則遵守義務)

第 39 條 세리사는, 소속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硏修)

第 39 條의 2 세리사는, 소속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 하며, 그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事務所 設置)

第 40 條 세리사(세리사 법인의 사원(재무성令에서 정한자를 포함한다. 제 4 항 에서도 같다.)을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 3 항 에서도 같다.) 및 세리사 법인은, 세리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세리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사무소는, 세리사 사무소라고 칭한다.

3. 세리사는, 세리사 사무소를 2 이상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세리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帳簿作成義務)

第 41 條 세리사는, 세리사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위촉자별로 1 건마다 세무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또는 세무상담의 내용 및 그 전말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장부는, 폐쇄후 5 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3. 세리사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제 1 항의 장부를 磁氣디스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使用人等에 對한 監督義務)

第 41 條의 2 세리사는, 세리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인, 기타 종사자를 사용할 때에는 세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결함이 없도록 당해 사용인 기타 종사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助言義務)

第 41 條의 3 세리사는, 세리사 업무를 할 때에, 위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혹은 지방세의 부과 혹은 징수를 면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혹은 지방세의 과세표준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하거나 혹은 가장 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시정을 위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業務制限)

第 42 條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 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세리사로 된 때에는, 이직후 1 년간 그 이직전 1 년내 담당하였던 직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業務停止)

第 43 條 세리사는, 징계처분에 의거, 변호사, 외국법 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혹은 사회보험 노무사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 또는 부동산 감정사의 감정평가등 업무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세리사가 보수있는 공직을 가지거나 그 직에 있는 기간중에도 또한 같다.

第 5 章 稅理士의 責任

(徵戒種類)

第 44 條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음의 3 종으로 한다.

一. 戒告

二. 1 년이내 세리사 업무정지

三. 세리사 업무금지

(脫稅相談等을 한 境遇의 徵戒)

第 45 條 재무대신은, 세리사가 고의로, 진정한 사실에 반하여 세무대리 혹은 세무서류의 작성을 한 때 또는 제 36 조[탈세상담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1 년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재무대신은, 세리사가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戒告 또는 1년이내의 세리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一般徵戒)

第 46 條 재무대신은, 전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리사가 제 33 조의 2 제 1 항 혹은 제 2 항[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면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또는 이 법률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제 44 조[징계종류]에 규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徵戒節次等)

第 47 條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세리사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하여 전二조에 규정한 행위 또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재무대신에게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한다.

2. 세리사회는, 그 회원에 대하여 전二조에 규정한 행위 또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재무대신에게 당해 회원의 성명 및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누구라도, 세리사가 전二조에 규정한 행위 또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재무대신에게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할 수 있다.

4. 재무대신은, 전二조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국세심의회에 자문하며, 그 의결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한다.

5. 재무대신은, 전二조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 서면으로 그 뜻을 당해 세리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登錄抹消制限)

第 47 條의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세리사가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 26 조 제 1 항 제一호[등록말소]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리사에게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懲戒處分 公告)

第 48 條 재무대신은, 제 45 조[탈세상담등을 한 경우의 징계] 또는 제 46 조[일반징계]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로 공고 하여야 한다.

第 5 章의 2 稅理士法人

(設立)

第 48 條의 2 세리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리사법인(세리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세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名稱)

第 48 條의 3 세리사 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리사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社員資格)

第 48 條의 4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세리사 여야만 한다.

2. 다음에 게재된 자는, 사원으로 될 수 없다.

一. 제 43 조[업무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 45 조[탈세상담등을 한 경우의 징계] 혹은 제 46 조[일반징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당해 업무의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자.

二. 제 48 조의 20 제 1 항[위법행위등에 대한 처분]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법인이 해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일 이전 30 일내에 사원이었던자로 그 처분일로부터 3 년(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業務範圍)

第 48 條의 5 세리사 법인은, 세리사 업무를 하는 이외에,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제 2 조 제 2 항[세리사의 업무]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第 48 條의 6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세리사 법인은, 제 2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당해 세리사 법인의 사원 또는 사용인인 세리사(이하 이 조 및 제 48 조의 20 제 4 항[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에서「社員等」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세리사 법인은 위탁자로서 당해 세리사 법인의 사원등 중에서 그 보좌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登記)

第 48 條의 7 세리사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設立節次)

第 48 條의 8 세리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원이 되고자 하는 세리사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사법(2005 년 법률 제 86 호)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은, 세리사 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준용 한다.

3.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一. 목적

二. 명칭

三. 사무소의 주소지

四. 사원의 성명 및 주소

五. 사원의 출자한 사항

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成立時期)

第 48 條의 9 세리사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成立申告等)

第 48 條의 10 세리사 법인은, 성립한 때에, 성립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을 첨부하여 그 뜻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이하 이 장에서 「본점 소재지의 세리사회」라 한다.)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세리사 법인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전항의 명부를 磁氣디스크로 만들 수 있다.

(業務執行權限)

第 48 條의 11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전원 업무집행의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의무를 부담한다.

2.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社員의 常駐)

第 48 條의 12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인 사원을 상주 시켜야 한다.

(定款變更)

第 48 條의 13 세리사 법인은 정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원의 동의에 따라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2. 세리사 법인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본점소재지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社員의 競業禁止)

第 48 條의 14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자기 혹은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또한 타 세리사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2. 세리사 법인의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따라 당해 사원 또는 제 3 자가 얻은 이익은, 세리사 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業務執行方法)

第 48 條의 15 세리사 법인은, 세리사가 아닌 자에게 세리사 업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稅理士의 權利 및 義務等에 關한 規定의 準用)

第 48 條의 16 제 1 조[세리사의사명], 제 3 조[세무대리의 권한명시], 제 31 조[특별위임을요하는 사항], 제 34 조[조사통지]부터 제 37 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까지, 제 39 조[회칙준수의무] 및 제 41 조[장부작성의무]부터 제 41 조의 3[조언의무]까지의 규정은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法定脫退)

第 48 條의 17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 탈퇴한다.

一. 세리사의 등록말소

二. 정관에 정하여진 사유의 발생

三. 총 사원의 동의

士. 제명

(解散)

第 48 條의 18 세리사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 해산한다.

一. 정관에 정하여진 사유의 발생

二. 총 사원의 동의

三. 타 세리사 법인과의 합병

四. 파산수속 개시결정

五. 해산을 명한 재판

六. 제 48 조의 20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2. 세리사 법인은, 전항의 규정 이외에, 1 인 사원이 되어 1 인 사원이 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6 월간 그 사원이 2 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6 월이 경과한 때 해산한다.

3.세리사 법인은, 제 1 항 제三호의 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뜻을 본점 소재지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裁判所의 監督)

第 48 條의 18 의 2 세리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재판소의 감독에 속한다.

2. 재판소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세리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는, 재무대신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거니 또는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4. 재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한 재판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淸算終了 申告)

第48條의18의3 청산이 종료된 때에, 청산인은 그 뜻을 일본세리사연합회에 계출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第48條의18의4 세리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관한 사건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檢査役의 選任)

第48條의18의5 재판소는 세리사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검사역을 선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검사역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3. 재판소는 제1항의 검사역을 선임한 때에는, 세리사법인이 당해 검사역에 지불 할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당해 세리사법인 및 검사역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合倂)

第 48 條의 19 세리사 법인은, 총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타 세리사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2.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세리사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세리사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세리사 법인은, 합병한때에 합병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합병에따라 설립한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를 첨부하여, 그 뜻을 본점 소재지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세리사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세리사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세리사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債權者 異議等)

第 48 條의 19 의 2 합병한 세리사 법인의 채권자는, 당해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2. 합병한 세리사 법인은, 다음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三호의 기간은 1 월 이하로 할 수 없다.

一. 합병을 한 취지

二.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세리사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세리사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세리사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三. 채권자가 일정기간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

3.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을 한 세리사 법인이 동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관보외에, 제 6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9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동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최고는 할 필요가 없다.

4. 채권자가 제 2 항 제三호의 기간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는 당해 합병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채권자가 제 2 항 제三호의 기간내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합병을 한 세리사 법인은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혹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채권자가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등(신탁회사및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영등에 관한 법률(1943 년 법률 제 43 호) 제 1 조 제 1 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합병을 하여도 당해 채권자를 해하는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회사법 제 939 조 제 1 항(제二호 및 제三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3 항, 제 940 조 제 1 항(제三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 3 항, 제 941 조, 제 946 조, 제 947 조, 제 951 조 제 2 항, 제 953 조 및 제 955 조의 규정은,세리사 법인이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 939 조 제 1 항 및 제 3 항중 「공고방식」은 「합병공고방식」으로, 동법 제 946 조 제 3 항중 「상호」는 「명칭」으로 바꾸어 읽는다.

(合併無效의 訴)

第 48 條의 19 의 3 회사법 제 828 조 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에 한 한다.) 및 제 2 항(제 7 호 및 제 8 호에 한 한다.), 제 834 조(제 7 호 및 제 8 호에 한 한다.), 제 835 조 제 1 항, 제 836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837 조부터 제 839 조까지, 제 843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제 4 호 2 항 단서를 제외한다.) 및 846 조의 규정은 세리사 법인의 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 동법 제 868 조 제 5 항, 제 870 조(제 15 호에 한 한다.), 제 871 조 본문, 제 872 조(제 4 호에 한 한다.), 제 873 조 본문, 제 875 조 및 제 876 조의 규정은 이 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843 조 제 4 항의 신청에서, 각각 준용한다.

(違法行爲等에 對한 處分)

第 48 條의 20 재무대신은, 세리사 법인이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 戒告하거나 혹은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제 47 조[징계절차등] 및 제 48 조[징계처분의 공고]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중인 세리사 법인은, 청산이 완료된 후에도, 이 조의 규정적용에 있어서 당해절차가 완료될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 1 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법인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세리사 법인의 사원등에 제 45 조[탈세상담등을 한 경우의 징계] 또는 제 46 조[일반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그 사원등인 세리사에게 징계처분을 병행하여 행한다.

(一般 社團法人 및 一般 財團法人에 관한 법률 및 會社法의 準用等)

第 48 條의 21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회사법, 파산법(1922 년 법률 제 71 조)상의 일부 文句를 세리법상의 해당조문의 일부文句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하 省略합니다.(飜譯者)

第6章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會)

第 49 條 세리사는, 국세국 관할구역 마다 1 개의 세리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세리사는, 회원인 세리사의 수가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국세청장관에게 당해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내에서 새로이 세리사회를 설립 가능한 구역(이하 「지정구역」이라 한다.)을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당해 청구를 한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지정구역을 정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구역이 정하여진 때에는, 당해 지정구역내에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등록을 받은 세리사는, 당해 지정구역에 하나의 세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세리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시에, 당해 세리사회가 설립되었던 지정구역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한 세리사회(이하 이장에서 「前의 稅理士會」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던 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당해 前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던 구역중 당해 지정구역 이외의 구역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前의 세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한다.

6. 세리사회는,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의 사명 및 직책을 감안하여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의 의무준수 및 세리사 업무의 개선진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부(제 49 조의 3 제 1 항[세리사 지부]에 규정한 지부를 말한다.) 및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감독업무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세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8. 세리사회는, 그 명칭중 세리사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稅理士會의 會則)

第 49 條의 2 세리사는, 세리사회를 설립하고자 할때에, 회칙을 정하고 그 회칙에 대하여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세리사회의 회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二.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三. 임원에 관한 규정
四. 회의에 관한 규정
五. 세리사의 품위유지에 관한 규정
六. 회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
七. 회원의 업무에 관한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八. 세리사 업무에 관계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
九. 위촉자의 경제적 이유에 따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보수로 행하는 세리사 업무에 관한 규정
十. 회비에 관한 규정
十一. 서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

3. 세리사회의 회칙변경(政令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는 것에 한 한다.)은,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稅理士會支部)

第 49 條의 3 세리사회는, 하나의 세무서 관할구역마다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접한 둘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을 지구로 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는, 세리사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부에 소속한 회원에 대하여 지도, 연락 및 감독을 한다.

(成立時期)

第 49 條의 4 세리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登記)

第 49 條의 5 세리사회는, 政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入會 및 脫退等)

第 49 條의 6 세리사는, 등록을 한 때에, 당연히 그 등록을 한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2. 세리사는, 등록을 한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를 소속 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에 소재지가 있는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를 변경할 뜻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을 한 때에, 당연히 종전의 소속 세리사회를 퇴회하고, 변경후의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3. 세리사 법인은, 그 성립시에 당연히 세리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4. 세리사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설치 또는 세리사 법인의 각 사무소를 각 소속 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에 이전한 때에는, 세리사 법인 사무소의 신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한 때에, 당연히 당해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5. 세리사 법인은, 그 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지에 따라 소속 세리사회의 구역내에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한 때에, 당연히 당 회 세리사회를 퇴회한다.

6.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은, 소속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이 변경(제 49 조 제 5 항[세리사회]의 규정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되어,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 사무소의 소재지가 소속 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당연히 종전의 소속 세리사회를 탈퇴하고, 그 구역 변경후의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7. 세리사는, 제 26 조 제 1 항 각호[등록말소]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해당된 때, 당연히 소속 세리사회를 퇴회한다.

8. 세리사 법인은, 해산한 때에, 당연히 소속 세리사회를 퇴회한다.

9.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은, 세리사 사무소 또는 세리사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지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任員)

第 49 條의 7 세리사회에, 회장, 부회장, 기타 회칙에 정하여진 임원을 둔다.

2. 회장은, 세리사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이 결원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4. 임원은, 회칙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總會)

第 49 條의 8 세리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세리사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세리사회의 회칙변경,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總會決議等의 報告)

第 49 條의 9 세리사회는, 총회의 결의 및 임원의 취임 또는 퇴임을 재무대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分爭調停)

第 49 條의 10 세리사회는, 회원의 업무분쟁에 대하여, 회원 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建議等)

第 49 條의 11 세리사회는, 세무행정 기타 조세 또는 세리사제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관공서에 건의하고 또는 그 자문에 답신할 수 있다.

(合併 및 解散)

第 49 條의 12 국세국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 구역내에 있는 세리사회가 합병 또는 해산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세리사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세리사회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세리사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세리사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 48 조의 19 의 2 의 규정은, 세리사회가 합병할 경우 준용한다.

4. 세리사회가 합병한 때에는, 합병에 따라 해산한 세리사회에 소속한 세

리사는, 당연히, 합병 후 존속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淸算中인 稅理士會의 能力)

第 49 條의 12 의 2 해산한 세리사회는,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 청산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淸算人)

第49條의12의3 세리사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수속 게시결정에 따라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회칙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또는 총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외의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二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

(裁判所에 의한 淸算人選任)

第49條의12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청산인의 결격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따르거나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淸算人의解任)

第49條의12의5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따르거나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淸算人의職務 및 權限)

第49條의12의6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현재업무의 종료

二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

三 잔여재산 인도

2 청산인은 전항 각호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債權의 申告催告等)

第49條의12의7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의 공고를 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채권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공고는 채권자가 그 기한 내 신고가 없을 때 청산에서 제외됨을 부기해야 한다. 다만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제척할 수는 없다.

3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4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期間經過後의 債權申告)

第49條의12의8 전조 제1항의 기간경과 후에 신고한 채권자는, 세리사회의 채무가 완제된 후 또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인도 되지 아니한 재산만, 청구할 수 있다.

(裁判所의 監督)

第49條의12의9 세리사회의 해산 및 청산은, 재판소의 감독에 속한다.

2 재판소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第 49 條의 13 전국의 세리사회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의 사명 및 직책을 거울삼아, 세리사 및 세리사 법인의 의무준수 및 세리사업무의 개선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리사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더불어 세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세리사회는, 당연히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

第 49 條의 14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칙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제 49 조의 2 제 2 항 제一호, 제三호부터 제五호까지, 제十호 및 제十一호[세리사회의 회칙]에 기재한 사항

二. 세리사 등록에 관한 규정

三. 제 49 조의 16[자격심사회]에 규정한 자격심사회에 관한 규정

四. 제 41 조 제 1 항[장부작성의무]의 장부 및 그 기재에 관한 규정

五. 세리사회의 회원연수에 관한 규정

六. 제 49 조의 2 제 2 항 제九호에 규정한 세리사 업무의 실시기준에 관한 규정

2.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칙변경(전항 제二호에 게재된 사항 기타 政令에 정하여진 중요사항에 관계되는 것에 한 한다.)은,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稅理士會에 關한 規定準用)

第 49 條의 15 제 49 조의 2 제 1 항[세리사회의 회칙], 제 49 조의 4[성립시기], 제 49 조의 5[등기], 제 49 조의 7[임원]부터 제 49 조의 9[총회결의등의 보고]까지 및 제 49 조의 11[건의 등]의 규정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資格審査會)

第 49 條의 16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자격심사회를 둔다.

2. 자격심사회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청구에 따라 제 22 조 제 1 항[등록에관한 결정]의 규정에 따른 등록 혹은 등록거부 또는 제 25 조 제 1 항[등록취소]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심의를 한다.

3. 자격심사회는 회장 및 위원 4 명으로 한다.

4. 회장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장이 맡는다.

5. 위원은, 회장이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세리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행정사무에 종사한 직원 및 학식경험자중 위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전 각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에서 정한다.

(總會決議의 取消)

第 49 條의 17 재무대신은, 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총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그 세리사회 혹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회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貸借對照表等)

第 49 條의 18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는, 매사업년도 제 49 조의 15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준용〕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 49 조의 8 제 3 항[총회]에 규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관보에 공고하는 한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그리고 회칙에 정하여진 사업보고서 및 감사의견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두고, 재무성令에서 정한기간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一般的監督)

第 49 條의 19 재무대신은, 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들 단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업무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들 단체의 업무상황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징취 또는 검사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확인조치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般社団法人 및 一般財団法人에 関한 法律의 準用) (

第49條의20 일반사담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政令委任)

第 49 條의 21 이 법률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설립, 운영, 합병,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에서 정한다.

第 7 章 雜 則

(臨時 稅務書類의 作成等)

第 50 條 국세국장(지방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의 신고시기에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 등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2 월 이내의 기간내에 조세를 지정하여 무보수로 신고서등의 작성 및 이들에 관련된 과세표준등의 계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상담에 응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민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 기타 政令에서 정한 법인 기타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33 조 제 2 항 및 제 4 항[서명날인의무], 제 36 조[탈세상담등의 금지] 및 제 38 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준용한다.

(稅理士業務를 行하는 辯護士等)

第 51 條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국세국장에게 통지함으로서 그 국세국의 관할구역내에서, 수시로 세리사 업무를 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범위에, 제 1 조[세리사의 사명], 제 30 조[세무대리의 권한명시], 제 31 조[특별위임을요하는사항],제 33 조[서명날인의무]부터 제 38 조[비밀유지의무]까지, 제 41 조{장부작성의무}부터 제 41 조의 3[조언의무]까지, 제 43 조 전단[업무정지], 제 44 조[징계종류]부터 제 46 조[일반징계]까지(이들 규정중세리사업무 금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 47 조[징계절차등], 제 48 조[징계처분의 공고], 제 54 조[세리사의 사용인등의 비밀유지의무] 및 제 55 조[감독상의 조치]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세리사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제 33 조 제 3 항 및 제 33 조의 2 제 3 항[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중「세리사인 뜻 기타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제 5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한 변호사인 뜻 및 동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변호사 법인의 업무로서 동항의 업무중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으로 한다.

3. 변호사법인(변호사법에 규정된 사원 전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국장에게 통지한 법인에 한한다.)은,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국세국장에게 통지함으로서, 그 국세국의 관할구역내에서, 수시로 세리사 업무를 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법인은,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범위에, 제 33 조, 제 33 조의 2, 제 48 조의 16[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등에 관한 규정준용](제 39 조[회칙준수의무]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48 조의 20[위법행위등에 대한 처분](세리사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 54 및 제 55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리사 법인으로 간주한다.

(行政書士等이 行하는 稅務書類의 作成)

第 51 條의 2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 법인은, 각각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며, 골프장 이용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 사업소세 기타 政令에서 정하여진 조세에 관하여 세무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여 행할 수 있다.

(稅理士業務의 制限)

第 52 條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아닌 자는, 이 법률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리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名稱使用制限)

第 53 條 세리사가 아닌 자는, 세리사 혹은 세리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리사 법인이 아닌 자는, 세리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아닌 단체는, 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三항의 규정은,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이 아닌자 더불어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아닌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稅理士의 使用人等의 秘密維持義務)

第 54 條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중 습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도 또한 같다.

(監督上의 措置)

第 55 條 국세청장관은, 세리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징취, 질문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확인조치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 56 條　削除

(事務의 委任)

第 57 條 국세청장관은, 제 55 조 제 1 항[감독상 조치]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세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 한때에는,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第 8 章　　罰 則

第 58 條 제 36 조[탈세상담등의 금지](제 48 조의 16[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준용]또는, 제 50 조 제 2 항[임시세무서류의 작성등]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 59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세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그 자격에 대하여 허위신청을 하여 세리사 명부에 등록하게 한 자.

二. 제 38 조[비밀유지의무](제 50 조 제 2 항[임시계산서류의 작성등]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 54 조[세리사의사용인등의 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

三. 제 52 조[세리사 업무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전항 제二호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第 60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 42 조[업무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

二. 제 43 조[업무정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三. 제 45 조[탈세상담등을 한 경우의 징계]혹은 제 46 조[일반징계]또는 제 48 조의 20 제 1 항[위법행위등에 대한 처분]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을 위반하여 세리사 업무를 행한 자.

第 61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 53 조 제 1 항[명칭사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
二. 제 5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三. 제 5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第 62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 48 조의 19 의 2 제 6 항(제 49 조의 12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95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한 조사기록부등에 동항에 규정한 전자공고조사에 관하여 법무성令에 정하여 진 것을 기재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당해 조사기록부등에 보존 하지 않은자.
二. 제 49 조의 19 제 1 항 또는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질문 또는 검사에서, 보고를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혹은 기피한 자.

第 63 條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 58 조, 제 59 조 제 1 항 제三호, 제 60 조 제三호(제 48 조의 20 제 1 항[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 제 61 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을 과한다.

第 64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백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一. 제 48 조의 19 의 2 제 6 항(제 49 조의 12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94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二. 정당한 이유 없이, 제 48 조의 19 의 2 제 6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951 조 제 2 항 각호 또는 제 955 조 제 2 항 각호에 게재된 청구를 거부한 자.
第 65 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리사 법인의 사원 혹은 청산인 또는 세리사회 혹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의 임원은, 30 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一. 이 법률에 근거한 政令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를 태만히 한 때

二. 제 48 조의 19 의 2 제 2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을 한 때
三. 제 48 조의 19 의 2 제 6 항(제 49 조의 12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941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은 때.
四. 정관 또는 제 48 조의 21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615 조 제 1 항의 회계장부 혹은 제 48 조의 21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617 조 제 1 항 혹은 제 2 항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거나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때
五. 제 48 조의 21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65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수속 개시의 신청을 태만히 한 때
六. 제 48 조의 21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66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七. 제 48 조의 21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 670 조 제 2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

附 則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稅務代理士法은 廢止한다. 以下 省略

日本의 稅理士法 施行令

(1951年6月15日 政令 第216号)
(最終改正 2007年8月3日 政令 第233号)

(稅理士 業務의 對象이 되지 않는 租稅)

第 1 條 세리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조세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중량세, 전원개발촉진세, 관세, 톤세, 특별톤세 및 수렵세, 법정외 보통세(법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법정외 보통세를 말하며, 지방세법(1950 년 법률 제 226 호) 제 1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4 조 제 3 항 혹은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 또는 동법 제 734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통세를 포함한다.) 및 법정외목적세(법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법정외목적세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 1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4 조 제 6 항 혹은 제 5 조 제 7 항의 규정 또는 동법 제 73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목적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申告等)

第 1 條의 2 법 제 2 조 제 1 항 제一호[세리사의 업무]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행위란, 조세(전조에 규정한 조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불복심사법(1962 년 법률 제 160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 보고, 신청, 청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

(會計에 關한 事務)

第 1 條의 3 법 제 3 조 제 1 항[세리사의 자격] 및 제 5 조 제 1 항 제一호 4[수험자격]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차대조표 계정 및 손익계정을 만들어 계리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계적 사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會計檢査等에 關한 行政事務)

第 2 條 법 제 5 조 제 1 항 제一호 2[수험자격]에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회계검사, 금융검사 또는 회사 기타단체의 경리에 관한 행정사무는, 다음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一. 회계검사원의 직원이 행하는 조세(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를 제외한다.) 수입에 관한 검사업무

二. 지방공공단체의 감사위원 또는 그 보조직원이 행하는 조세수입에 관한 감사업무

三. 법 제 5 조 제 1 항 제一호 4 에 규정한 법인이 전조에 규정한 회계에 관한 사무로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는 검사업무

四. 재정융자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행하는 운용처의 감사업무

五. 은행법(1981 년 법률 제 59 호) 기타 법률에 근거한 검사사무에서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것

六. 증권거래법(1948 년 법률 제 25 호) 기타 법률에 근거한 범칙사건의 조사업무로서 재무성令에서 정하여진 것

七. 금융기관재건정비법(1946 년 법률 제 39 호)또는기업 재건정비법(1946 년 법률제 40 호)의규정에 근거하여 행하는 정비계획서 또는 최종처리 방법서의 검사업무

(資金의 運用에 關한 事務)

第 3 條 법 제 5 조 제 1 항 제一호 3[수험자격]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대부 기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자금대부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행하는 대부처 또는 투자처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심사사무 그리고 당해 심사사무를 포함한 자금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무로 한다.

第 4 條 삭제

(法律上 資格이 있는 者)

第 5 條 법 제 5 조 제 1 항 제一호 6[수험자격]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는,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부동산감정사로 한다.

(試驗科目 一部 免除基準)

第 6 條 법 제 7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시험과목의 일부면제등]까지 및 제 11 조 제 2 항[합격증서등]에서 지정한 政令에서 정한 기준은, 만점의 60%로 한다.

(受驗手數料等)

第 6 條의 2 법 제 9 조 제 1 항[수험수수료]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금액은, 수험과목의 수가 1 과목의 경우 3 천 5 백엔, 2 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3 천 5 백엔과 1 천엔에 1 을 초과하는 수험과목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법 제 9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금액은, 8 천 8 백엔으로 한다.

(稅理士會의 通知)

第 6 條의 3 세리사회가 법 제 47 조 제 2 항[징계절차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대신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세리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세국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稅理士會의 設立)

第 7 條 세리사가 법 제 49 조 제 1 항[세리사회]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설립하려고 하는 세리사회의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 5 인이상이 설립위원이 되어, 회칙을 정하고 설립총회를 거쳐,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세리사회의 회칙]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국세청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총회 2 주일 전까지,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국세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자의 2/3 이상의 다수결 방식으로 한다.

4.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로서, 설립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자의 의결권은, 사전에 회의목적 사항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표시한 서면을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회칙과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의 명부 및 설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稅理士會의 會則變更)

第 7 條의 2 법 제 49 조의 2 제 3 항[세리사회 회칙]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동조 제 2 항 제四호부터 제九호까지 게재된 사항으로 한다.

2. 세리사회는, 법 제 49 조의 2 제 3 항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때에, 당해 인가신청서를 국세청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신청서에는, 동항의 인가에 관계되는 변경전 회칙 및 당해 변경후 회칙과 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總會召集)

第 8 條 세리사회는, 총회 소집시에 그 일시 및 장소와 회의목적 사항을, 총회 2 주일 전까지 당해 세리사회의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회원인 세리사에 한한다. 다음 조 에서도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總會의 議事)

第 9 條 세리사회의 총회의사는, 회원 1/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세리사회의 총회에서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1/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3. 제 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세리사회의 설립]의 규정은, 제 2 항의 의결방식을 준용한다.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한 회원은, 세리사회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되는 회원으로 한다.

(會員名簿)

第 10 條 세리사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항상 정비해 주어야 한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設立)

第 11 條 세리사회가 법 제 49 조의 13 제 1 항[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규정에 따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회원으로 되는 세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설립총회를 거쳐, 법 제 49 조의 15[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준용]에서 준용하는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세리사회의 회칙]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국세청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7 조 제 6 항[세리사회의 설립]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준용한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變更)

第 11 條의 2 법 제 49 조의 14 제 2 항[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동조 제 1 항 제一호(법 제 49 조의 2 제 2 항 제 四호 및 제五호[세리사회 회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四호부터 제六호까지 게재된 사항으로 한다.
2. 제 7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세리사회 회칙변경]의 규정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법 제 49 조의 14 제 2 항[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때 준용한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總會)

第 12 條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회칙에서,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권을 회원인 세리사회의 세리사의 수에 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제 8 조[총회소집] 및 제 9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총회의사]까지의 규정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칙에서 회원의 의결권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동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출석자」는「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으로 대체한다.

(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

第 12 條의 2 자격심사회의 위원은, 세리사, 국세행정 사무에 종사한 직원, 지방세의 행정사무에 종사한 직원 및 학식경험자 각 1 명으로 한다.
2. 자격심사회의 회장은, 법 제 49 조의 16 제 5 항[자격심사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때에는, 당해 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관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심사회의 회장은, 자격심사회의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4. 자격심사회의 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5. 자격심사회의 회장은, 회무를 총괄 한다.

6. 자격심사회는, 출석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
7. 자격심사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8. 전 각항에 규정된 것 이외, 자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에서 정한다.

(稅理士會의 報告)
第 13 條 세리사회가 법 제 49 조의 9[총회의결 등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재무대신에게 보고할 때에는, 당해 세리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세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臨時 稅務書類 作成等을 許可한 任職員에 屬하는 法人 其他團體)
第 14 條 법 제 50 조 제 1 항 단서[임시 세무서류의 작성등]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법인 기타 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상공회로 한다.

(行政書士가 作成可能한 租稅關聯 稅務書類)
第 14 條의 2 법 제 51 조의 2[행정서사등이 행하는 조세서류의 작성]에서 규정한, 政令에서 정한 조세는 석유가스세, 부동산취득세, 도.군 담배세(시 담배세를 포함한다.), 區담배세(특별구 담배세를 포함한다.), 특별토지보유세 및 入湯稅로 한다.

(當該職員의 證票携帶)
第 15 條 법 제 49 조의 19 제 1 항[일반적 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이 세리사회 혹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경우 혹은 법 제 55 조 제 1 항[감독상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이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附則
1. 이 政令은, 법 시행일(1951 년 7 월 15 일)로부터 시행한다.
2. 以下 「省略」

第 5 回　日·韓　學術討論會

主題 / (日本) 書面添附制度 (韓國) 電子稅金計算書

副題 / (日本) 會計參與制度 (韓國) 名稱使用獨占

要 約 發 表 文

2009. 10. 13(火)

近畿稅理士會/釜山地方稅務士會

第５回 日－ 韓 學術討論會

要 約 發 表 文

主題 및 副題 發表文

Ⅰ(日本/主題) 書面添付制度에 對하여 / 2
發表者 : 業務對策部長 田 中 勇 治

Ⅱ (日本/副題) 會計參與制度 / 20
發表者 : 會計參與普及推進委員長 岩 橋 一 好

Ⅲ (韓國/主題)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에 對하여 / 28
發表者 : 國際理事 郭 泰淳

Ⅳ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使用 獨占 / 40
發表者 : 國際部員 黃 仁宰

2009 년 10 월 13 일(화)
제 5 회일·한 학술토론회
장 소:긴끼세리사회관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개 요

(5 분)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

1.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1. 2 세무대리권한관계 (세무대리권한증서)
1. 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1. 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1. 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5 분)

2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첨부서면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2.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의 제정
2. 2 국세청「서면첨부제도의 운용 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의 제정
2. 3 세무대리권한증서 기재사례・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
2. 4 첨부서면 작성시 세리사의 대응 -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검증 -

(5 분)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취급
3. 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3. 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3. 4 의견청취 관련 모의사례 (법인세)

(5 분)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4. 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책무
4. 2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4. 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4. 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

(5 분)

5 끝맺음에 대신하여 -향후 전망에 대하여 —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5 분)

먼저,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제도자체의 신설은, 1956 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거슬러 갑니다. 서면첨부제도는、전국의 세리사회에서 구성되어 상부기관인 일세련의 요청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당초에는 「세무행정상 경정 시」에 세리사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신설되었습니다. 그 후 1970 년 세리사법 개정 시 세리사 업무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원칙적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면첨부가 가능한 세목이 원칙적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 되었고, 새로이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의 심사에 관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는 세리사가 기재한 첨부서면을 존중하고 세리사의 권리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세리사법 제 35 조(의견청취) 제 1 항에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 되었고, 현재의 서면첨부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 2008 년 6 월 13 일 일세련과 국세청에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대한 합의사항이 **「참고자료 1」**대로 합의되었고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 정착토록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상세한 점은 **제 2 장 「서면첨부제도가 끼치는 효과와 유의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 장 「1. 2 세무대리 권한관계」에 기재한 대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에 의견청취를 할 때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첨부서면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제출이 요건으로 되어있으며 이 서면은, 세리사법 제 30 조에 「세무대리 권한증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서면첨부제도의 개요와 의견청취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리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거래형태의 차이에 따라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 시)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구분되며, 앞의 일세련과 국세청에서「서면첨부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대한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 2008 년 6 월 24 일부로 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관하여 「법령해석통달」이 **「참고자료 2.」**대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에 대하여는,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 전의 의견청취(제 1 항)과, 종래부터 경정처분 전의 의견청취(제 2 항) 및 불복신청관련 조사의 의견청취(제 3 항)의 3 가지로 구분되며, 세무직원에 부과된 의무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서면첨부제도」와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며,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종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존재의식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켜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즉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서면첨부제도의 변천은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변천이며, 세리사법 제 20 조에 규정된 세무대리 권한을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2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5 분)

그럼, 제 2 장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첨부서면 작성 시 실무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세련과 국세청에서는 2008 년 6 월 13 일 먼저 설명 드린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환경정비로서 일세련에서는 **「참고자료 3.」**대로 첨부서면 작성 시의 유의점과 작성기준이 되는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참고자료 4.」**대로 의견청취 후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서로 조사생략통지를 하는 취지의 「사무운영지침」이, 각각 2009 년 4 월 1 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일세련에서 제정한 지침에 의거 첨부서면의 의의가 명확히 되었으며 첨부서면은 세리사법에 의한 세리사 고유의 권리로서 작성되며, 또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계약에 근거 세리사 업무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제정한 「사무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은 금년 7 월 10 일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서면첨부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고 세무집행을 더욱 더 원활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일세련의 협조가 불가피함을 사무운영지침에서 명확하게 하고, 세리사법 제 35 조의 1 항에 규정된 「조사관련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결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리사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뜻을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의견청취에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이 조사관련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리사법 제 30 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조사담당자가 사전통지예정일 1 주 내지 2 주일 전까지 의견청취를 할 뜻을 세리사 등에게 연락하며 일시 및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 등이 신고 시 계산한 사항과 의견청취전에 발생한 의문점에 대한 해명이 목적이며,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시 세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 세리사에의 연락은, 의견청취 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현시점에는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알리며,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고 세리사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에 새로운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사전통지를 할 경우에도 다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문제에 대하여는, **제 3 장 「의견청취 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문제점」**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첨부서면작성시 실무적 대응으로, 세리사법 제 30 조에 규정한 「세무대리 권한증서」및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서 첨부서면의 기재방법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 확인을 바랍니다.

이 기재사례에서는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시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한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규정한 첨부서면에 기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조금 전 설명한 순서에 따라 세무직원은 세리사에게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에 의견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견청취결과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연락하며,「의견청취 결과 통지문」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세련「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과 국세청의 「사무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를 운영할 때의 환경은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첨부제도에 관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이며, 여기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과제의 논점으로, 관계된 납세의무자의 선별화, 불공평성, 세리사의 책임문제, 첨부서면의 허위기재와 징계처분, 그리고 세무행정의 하청 등 각론입니다만, 어느 쪽이든 서면부제도의 입법취지의 선례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할 때, 그 과제로 되는 사실적 현상은 일부분만 포착되지 않음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5 분)

그러면, 제 3 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3 장에서는 서면첨부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유의점에 대한 각론입니다.

먼저,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년 4 월 1 일 제정된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서는, 위의 가산세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 기재된 대로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국세통칙법 제 65 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비위사항의 지적이 있었는지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거 「경정 예지」의 유무를 판단함으로,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 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 여부에 따르므로 「경정 예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에서는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조사가 있다는 점」보다는 「경정할 것이라고 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 사실인정에 의거 판단되는 것입니다만 이를 규정한 국세통칙법 제 65 조 제 5 항의 해석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은 그 사실인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걸치며,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폭넓게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리사에게 사전통지 전에 의견청취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아직 연락도 되지 않은 단계 혹은 의견청취 후, 실지조사에 착수되지 않은 단계만을 가지고 「무조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구체적 비위사항이 「어떠한 경위로」되었는가 라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서,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단계 즉, 넓은 의미의 조사착수 후 단계입니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위사항을 지적 받기 전에 세무대리권한을 가진 세리사가 확인 또는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이 있음을 예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첨부서면은 세리사의 권리행사로서 첨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위임 받아 세리사가 작성하는 세무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의 의견청취는 세무당국과 세리사와의 관련사항이고, 또한, 의견청취의 대상은 세리사가 작성한 첨부서면의 기재사항뿐이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검사권이란, 세무직원이 과세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53 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질문 및 검사권한」입니다만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첨부서면 관련 의견청취는 어디까지나 세리사 등의 자주적, 그리고 임의적인 첨부서면에 관련된 청취이고, 의견진술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질문검사권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무당국도 서면첨부제도를 운영할 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의견청취 시,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견청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시 세리사의 대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첨부제도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서면기재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세리사도 세무관공서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의 목적은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질문검사권의 요건인 조세에 관하여「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와는 다르며,세리사가 작성한 신고서 또는 세리사가 심사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가 서로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신뢰관계가 기초로 됩니다.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리사는 의견청취 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유의점으로 본고에서는 10 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면첨부는, 세리사에게 부여된 하나의 권리이며,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어느 쪽이던, 세리사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세무직원의 엄정한 의무이행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에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실무적 대응으로 제 2 장에서 제시한 사례에 의거「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견청취 결과 세리사의 개별· 구체적인 의견표명과 세무직원이 질의 결과 신고와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현시점에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5 분)

그러면, 제 4 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가인 세리사의 사회적 평가와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서면첨부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회환경은, 국민의 예상을 초월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사를 에워싼 환경도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을 계기로 국세전자신고· 납세시스템(e-Tax)과 지방세 포탈시스템(eLTAX)의 도입,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검토, 게다가 2006 년 5 월 1 일 시행된 회사법 등, 오늘 또 하나의 의제인 「회계참여」가 업무에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세무 및 회계의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 업무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다양화 되리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리사는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고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때 단순한 서면으로서 신고되는 것이 아니며, 사무소의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맡은바 임무를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리사가 자기의 책임과 권리로서, 진정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신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서면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로서 중소기업 등 관여된 금융기관의 신뢰조성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가 촉진되는 정세 하에서, 서면첨부 효과가, 세무당국에의 대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금융기관을 비롯한 타관청과 사회에 그 존재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리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시 전문가로서 적정한 주의를 함은 물론, 본인이 깊이 있는 연구를 함은 당연하며, 동시에 법적 책임을 세리사도 의식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첨부제도는 그 책임범위로서 세리사가 자기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첨부서면에 명확하게 자신의 책임범위를 기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행사와 결과로서 자기자신의 법적 방위 기능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신고서에 서면을 첨부하거나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세리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편 과세권자인 세무관공서에서도 첨부서면의 기재내용 및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는 세리사 및 과세관청이 서로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신뢰관계는 기본입니다. 신뢰관계의 조성과정에서 이 제도가 보급되고 성과가 있을 때 입법취지가 실현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 (5 분)

마지막으로,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효과와 유의점 및「조사관련 사전통지前」 의견청취 등, 제도의 변천에 입각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해 갑니다.

이 제도는,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시 신설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 의견청취(세리사법 제 35 조 제 1 항)」에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고, 세리사법에 부여된 「세리사의 권리」로서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첨부제도에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견청취에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첨부서면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권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세무대리 권한증서)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한 세리사의 대응이나 의견에는 개개의 과제임으로, 본고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며, 아울러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가 끼치는 의의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첨부서면의 작성은 임의며 신고서에 서면의 첨부여부 또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도 전부 세리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본 제도의 활용상황은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장 시 적용범위가 확충된 후, 매년 서서히 향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5.7%(법인세/2007 년도)로 현재는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세리사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필연성과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1970 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일본의 「조세법률주의」와 「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하였고 세리사법 제 1 조의「세리사의 사명」에도 존재합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이고 적정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것은, 세무 및 회계에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 세리사들 입니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 역할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지도의 충실,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정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고를 인정하고, 실지조사를 생략하며 게다가 적정한 납세가 양심적으로 전문적인 세리사의 관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각 세리사회에서는, 각 국세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이며, 긴끼세리사회에서도 2009 년도 중점시책으로「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을 꾀하며 세리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시책을 한다」는 점을 필두로, 세리사에 대한 연수회 개최, 세무행정과의 계속적 협의를 통하여 세리사에게 부여된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 정착시키기 위하여 회원 전부가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이 서면첨부제도가 더 한층 보급· 정착됨에 따라, 세리사법 제 1 조에 규정된 「세리사의 사명」의 실현이 한층 더 꾀하여 지도록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증을 받음 으로서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는 한국의「성실신고 검증제도」의 도입 예정에 귀 기울려, 일본에서의「서면첨부제도」가 좋은 지표가 되기를 절망하며 끝맺음에 대신합니다.

이 상

(日本/副題)「會計參與制度」

～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2006 년 9 월 21 일 - 22 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 2 회 학술토론회에서「회계참여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싼 경위를 중심으로, 주로 회계참여 제도의 포인트, 즉 Ⅰ. 회계참여의 자격· 설치범위· 선임방법· 인원· 임기, Ⅱ. 회계참여 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Ⅲ. 회계참여의 책임에 대하여 소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참여제도가 시행된 지 3 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참여란 어떠한 제도인가에 대하여 제 2 회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본 제도를 신설한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참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에 관하여 전문식견을 가진 세리사 ·세리사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이, 이사· 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계산서류를 이사등과는 별도로 보존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명시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며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본 제도를 만든 취지는, 특히 회계감사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회사의 계산서류의 기재의 적정성을 높 이고 회계전문가인 회계참여가 계산서류의 작성에 관여 함으로서, 이사가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주주에게 설명하는 일이 경감되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 게 됩니다.

즉, 본 제도는 주로 중소회사를 대상으로 계산서류 기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산서류 작성단계부터 관여하여 회계참여가 당해 회사의 회계 면을 지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참여의 임기는 2 년이 원칙이며,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회계참여를 설치한 경우, 그 취지 및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을 등기하게 되며, 회사 및 제 3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와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주식회사 에 대한 책임은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회계참여를 둠에 따른 메리트로서는, 감사역을 두지 아니한 간소한 주식회사에서도 전문가가 관여한 신뢰성 높은 계산서류를 작성, 명시 함으로서 그 회사의 신용도의 향상과 거래 금융기관 등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 종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계참여제도의 경과에 대하여 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관련한 대처상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참여제도는,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며 제 외국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실지 업무 시에 준거하여야 할 지침이 내외에 없으며, 또한 동 제도가 중소회사의 계산서류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있으므로,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적정」판단을 하는가라는 룰로서, 회계참여가 근거하여야 할 통일적 회계처리 지침 인『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이 2005 년 8 월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를 선두로 관계 4 단체에서 책정·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계참여가 직무집행 시 근거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을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와 공동으로 작성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두 지침은 회계참여의 직무수준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계참여가 직무집행 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법상 제도인 회계참여제도는 세리사 업무와는 별도로 무거운 책임문제 가 발생하며 회계참여 업무가 새로운 업무분야이므로 업무착오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도정착의 일환으로서 2007 년 7 월에 회계참여의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보험이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회계참여제도의 대외 PR에 대하여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 관계관청, 중소기업 단체, 금융기관 등에 보급 및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요청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당 회에서도 조금 전에 보신 인쇄물「회계참여 권유」를 작성하여, 주로 회원의 거래처 등 에게 회원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참여제도 시행으로부터 제도의 주지· 정착과 관련한 대처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 회에서는 특히 회계참여 업무는 세리사 업무와 가장 밀접한 영역 이므로 소중히 키워 나아갈 제도로서 인식하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동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계참여제도의 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회계참여 설치회사에 대하여, 법인 이외가 회계참여로 됨으로 등기첨부 서류로 필요한 세리사회 등이 발행하는「자격증명서」의 발행건수에 따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금년 7 월말 현재 자격증명서에서는, 세리사회에서 1,580 건,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수는 328 건이며, 세리사법인 및 감사법인을 포함하여도 현재 약 2,000 사 이상 된다고 추정됩니다.

당 회의 발행한 건수는 388 건이며,일본에서 개인세리사가 취임하고 있는 회계참여 설치회사 중 약 1/4 을 당 회 세리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참여로 취임한 세리사로부터 소감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지난 가을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정리한『회계참여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회답자 474 명)에 의하면, 회계참여 취임에 대하여, 취임경위에 대하여는「거래처의 요청」이 73.9%로 「본인 스스로」(27.6%)보다 크게 앞질러,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많다고 짐작됩니다. 또한 고문세리사와의 겸무에 대하여는 92.7%로, 대부분이 취임기업의 고문세리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시 회사에 요청한 사항은「회계참여제도의 이해」(70.9%),「중소기업 회계에 관한 지침적용」(57.5%),「회사법의 준수」(50.9%) 의 순서입니다.

취임기업에 대하여, 취임한 기업 수는, 1 사가 78.7%로 가장 많았고, 또한 자본금은 1,000 만엔 이상 3,000 만엔 미만 기업이 55.4%로 절반이상 차지하였고, 창업년도는 30 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5 년 미만인 이른바 벤처기업이 21.3%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보수는 1 사당 월 5 만엔 이하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5 만엔 초과 10 만엔 이하, 10 만엔 초과 20 만엔 이하의 순번이었으며, 50 만엔 초과도 1.3%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계참여에 취임하여 좋았던 점은,「경영자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졌다」(46.1%),「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었다」(42.3%),「금융기관과 거래처로부터 신용도가 높아졌다」(32.9%)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계속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 회계참여제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금년 3월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유효회답 수 4,569사)에 따른 설명입니다.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상황에 대하여는, 회계참여제도를「이미 도입」한 기업은 전년도 조사보다 5포인트 증가된 8.5%이며,「향후 도입예정」(2.3%) 인 기업을 더하면 약1할 됩니다. 또한「주변상황을 보아 가면서」가 12.8%입니다.

회계참여를 의뢰한 회계전문가에 대하여,「세리사」가 7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공인회계사」가 15.5%,「세리사법인」이 9.4%입니다.회계참여제도를 이용할 때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50만엔 미만」이 41.6%,「5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이 31.2%로, 100만엔 미만이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참여를 설치한 이유로,「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를 높이고자」 가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다」가 16.9%,「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리사로부터 요청」이 11.2%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참여제도의 사회적 요청에 대하여, 회계참여 설치회사를 대상으로 융자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신용보증협회, 은행 등을 합하여 현재 전국에 48개 기관이 있으며, 어느 쪽이던 무담보, 무보증,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우대 융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참여제도의 경과부터 현상까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 회에서는 회계참여제도 자체가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로 손쉬운 도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 회계참여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 ① 대외 PR 확대, ②우대융자제도 추진, ③실무연수회 실시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참여제도에 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년 10 월 13 일(화)
제 5 회 일·한 학술토론회
장 소 : 긴끼세리사 회관

韓國의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

(6 분)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1.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5 세금계산서

(13 분)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2.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2. 2 시행시기
2. 3 발급대상
2.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절차
2. 5 전자세금계산서 송부
2. 6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2. 7 세액공제와 가산세
2. 8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6 분)
3 향후 전망에 대하여

3. 1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방안
3. 2 전산법인 설립
3. 3 전산법인 사업추진 현황

Ⅰ. 부가가치세법 개요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추가로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과세대상에 따른 구분방법으로 국민 총 생산형(GNP type)과 소득형(NNP type) 및 소비형(Consumption type)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과세방법으로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습니다.

가산법이란, 부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공제법은 부가가치의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공제법에는 前段階 去來額 控除法과 前段階 稅額控除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경제적인 효과로서 수출촉진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 투자유인, 자원배분의 합리화, 세수확보 및 예측의 容易性,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物價騰貴, 조세부담의 역진성,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과 매출이 확정되며, 영수증 및 청구서의 기능 외에 장부로서의 기능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원적 기능,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의 轉嫁가 가능합니다.

(2) 파생적 기능

1)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송장(invoce)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2)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전자세금계산서란, 세법상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기존 종이계산서와의 차이점은 발행되는 형태의 차이이며, 암호화된 알고리즘 (Algorithm)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드디스크 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출력에 따른 비용이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매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어 신고기간 세무사사무소의 분주함은 없어지게 됩니다.

시행시기

(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단지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절차

(1)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교부 중계사이트 (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하는 방법과
(2)국세청 발행시스템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전산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3)전화기를 통한 ARS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한 VAN 단말기 발행 방법이 있으며,
* (3)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가 해당되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①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 인증서 발급비용
  법인:4,400원(개인 2,200원), 범용:110,000원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송신한다(인터넷 전산시스템)
④ 수신 후 승인(공급 받는 자)통지를 합니다.

ASP 사업자 등은 국세청이 개발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지침」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표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ASP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자 및 ASP(중계 사업자)사업자, 그리고 국세청 전산시스템별 교부절차는 하기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 등 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ASP) 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교부절차 도해)

(2)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소규모 사업자)

(교부절차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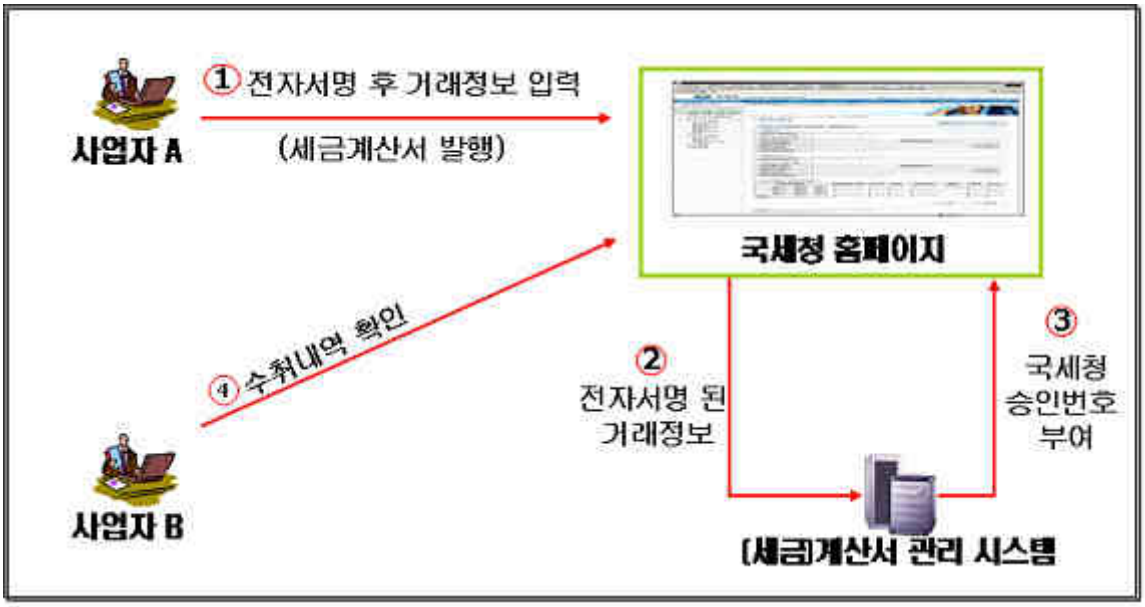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법인사업자는 2010 년 1 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아야만 합니다.

(1) 법인사업자 (37 만 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SP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mail 계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400 만 명)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E-mail 계정이 있어야만 하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E-Mail 계정

가급적 대용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요정보로서 다루도록 일종의 “국세청 발송 메일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 원(연간 한도 100 만원)을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장점

(1) 업무시간 단축 (2) 오류발생 감소 (3) 장비 및 공간 불필요 (4) 업무 편의성 증대 (5) 경상비용 절감 (6) 허위세금계산서 근절 (7) 철저한 보안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1) 전산장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 되며,
(2) 소규모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오류 발생의 가능성 상존 하고,
(3) 국세청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 됩니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방안

2010 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법인사업자 의무화를 계기로 설립추진중인 전산법인은 회원들의 기대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와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 받고 있다. 지금 출범하는 전산법인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기장 및 신고대리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장분석 및 경쟁 시 분석을 통해 사업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현실적인 사업대안 제시, 다수 회원의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여 2-3 년 후에도 기장료가 감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전산법인 설립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의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주축이 되어 전산법인(ASP 사업자) 설립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 월 29 일 현재 전체 개업회원 8,170 명 중 4,545 명이 참가(참가율/55.63%)하여 32 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전산법인 설립 추진단(신설법인 명/ ㈜한길 TIS)이 지금 설립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전산법인 사업추진 현황

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대략 6 억 매(최대 10 억 매)정도이며, 세금계산서 1 매당 발행수수료로 200 원을 책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간 2,000 억원 대의 신 IT(정보기술)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50 여개 회사를 회원사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협의회에서는 1977 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 30 여년 간 사용되던 종이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국내 세무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② 한국세무사회에서 설립 중인 전산법인도 이들 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무사업계의 대 변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③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5 월 4 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법인인 다테브(Datev)의 대표 캄프 (Kampf)와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독일식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獨占使用 그 後

Ⅰ. 서론

개정전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하는 세무대리 일원화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일원화였으며,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세무사의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업무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납세자의 인식과 선택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위헌여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역활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되었다.

Ⅱ.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진행과정

한국세무사제도 변천과정

우리 세무사법은 1961.9.9.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여 탄생하였다. 당시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하였다. 1989년에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인 세무사는 전업인 경우에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상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세법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명칭으로만 표시되어 세무사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배제를 추진하여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자동자격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각자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각국의 사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대부분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각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리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세무대리 일원화를 이루었다

세무사법 개정내용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2004 년부터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여기에 등록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의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규정 중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법 적용요약표

(법률 제 7032 호) 2003 년 12 월 31 일 법 개정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 취득자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 취득자	
구 분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1)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①재정경제부 세무사등록부 등록	필수	임의	불가	불가
②재정경제부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무관	무관	필수	불가
③세무사명칭사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2)세무사법 적용여부(등록에 한함)				
①한국세무사회 가입 및 제명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②교육 관련 의무규정	없음 1)	없음 1)	없음	없음
③징계 관련 규정	적용 2)	적용 2)	적용 2)	없음
④업무(비밀엄수,신의성실 등)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⑤벌칙 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⑥기타 규정	적용	적용	없음	없음

*1) 전업인 경우에는 적용

*2) 세무사회 회칙 위반 관련한 징계규정은 적용 아니함

Ⅲ. 세무사 명칭의 독점사용 그 이후

세무사 명칭 독점사용으로 인한 효과

(1)세무대리 시장에서 각 자격사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세무서비스 질의 향상
(2)소비자로 하여금 명칭혼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세무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소비자 합리적인 선택권 제고
(3)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과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라는 인식을 제고
(4)자격이 있으면서 명칭사용 금지는 업무수행에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동자격폐지와 유사한 효과

세무사법 개정 이후 진행사항

1)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세무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명칭'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소수의 반대의견은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며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은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재발의(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08.8.7)

변호사자격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 제고②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전문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③전자세정의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④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 ⑤자격이 있으면서 명칭을 사용못하는 입법적 모순 해결 ⑥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서비스 분야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 보고가 있다.

한편, ①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어도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실익이 없다는 점 ②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최근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Ⅳ. 향후 과제

한국세무사제도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복잡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자격폐지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함께 입법과정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으며, 자동자격폐지는 세계적 추세로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개정 후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실효성의 문제점으로 있어 공인회계사회와 꾸준한 대화와 논리의 연구로 자동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은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자격사의 대량배출과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법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무·회계시장의 과다경쟁 속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와 권익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